2009년 공동학술회의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 죄수 · 형벌론 및 형법각칙 –

일 시 | 2009. 9. 11.(금) 13:00 ~ 18:00

장 소 | 엘타워 EL Tower 5층 메리골드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일 정

◦ 13:00-13:20 등 록
◦ 13:20-13:40 개회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상기
축 사 - 법무부차관 황희철
축 사 - 한국형사법학회장 손동권
축 사 -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정영일

제1부	죄수·형벌론의 개정방안		
	사 회	강동범 교수 (이화여대, 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이사)	
	13:40-14:20	**제1주제**	**「죄수론」분야 개정방안**
		발 표	김성룡 교수 (경북대)
		토 론	이진국 교수 (아주대)
	14:20-15:00	**제2주제**	**「형벌론」분야 개정방안**
		발 표	한상훈 교수 (연세대)
		토 론	김성은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5:00-15:10 휴 식

제2부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Ⅰ		
	사 회	이용식 교수 (서울대,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15:10-15:50	**제3주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분야 개정방안**
		발 표	이동희 교수 (경찰대)
		토 론	강형민 검사 (동부지검)
	15:50-16:30	**제4주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분야 개정방안**
		발 표	서보학 교수 (경희대)
		토 론	하태영 교수 (동아대)

◦ 16:30-16:40 휴 식

제3부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Ⅱ		
	사 회	하태훈 교수 (고려대,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16:40-17:20	**제5주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개정방안**
		발 표	이경재 교수 (충북대)
		토 론	탁희성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20-18:00	**제6주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개정방안**
		발 표	박미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 론	김성훈 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

◦ 18:00- 만 찬

목 차

제 1 부

제1주제 / 제2주제 : 「죄수·형벌」분야 개정방안 ····· 11
Ⅰ. 죄수·형벌 분야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 11
Ⅱ. 죄수 분야 개정안 ····· 12
Ⅲ. 형벌 분야 개정안 ····· 19

제 2 부

제3주제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분야 개정방안 ····· 75
제1장 살인의 죄 ····· 75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81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 84
제4장 낙태의 죄 ····· 85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 87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 ····· 88
제7장 협박과 강요의 죄 ····· 91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 93
제9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 ····· 98

제4주제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분야 개정방안 ····· 133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 133
제12장 비밀침해죄 ····· 137
제13장 주거침입죄 ····· 141
제14장 절도와 강도의 죄 ····· 144
제15장 사기와 공갈의 죄 ····· 147
제16장 횡령과 배임의 죄 ····· 150
제17장 장물에 관한 죄 ····· 152
제18장 손괴의 죄 ····· 153
제19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54

제 3 부

제5주제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분야 개정방안 ····· 177
제20장 공안을 해하는 죄 ····· 177
제21장 폭발물에 관한 죄 ····· 178
제22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79
제23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82
제24장 교통방해의 죄 ····· 182
제25장 음식물에 관한 죄 ····· 184
제26장 아편에 관한 죄 ····· 185
제27장 환경에 관한 죄 ····· 186
제28장 통화에 관한 죄 ····· 186
제29장 유가증권에 관한 죄 ····· 186
제30장 문서에 관한 죄 ····· 187
제31장 인장에 관한 죄 ····· 189
제3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189
제33장 도박에 관한 죄 ····· 193
제34장 신앙에 관한 죄 ····· 196

제6주제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개정방안 ····· 221
제35장 내란의 죄 ····· 221
제36장 외환의 죄 ····· 222
제37장 국교에 관한 죄 ····· 227
제38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27
제39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31
제40장 도주와 범인은닉죄 ····· 233
제41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34

제 1 부

죄수·형벌론의 개정방안

사회 :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이사)

제1주제 / 제2주제

죄수·형벌론의 개정방안

제1주제 **「죄수론」분야 개정방안**

□ 발표자: 김성룡 교수(경북대)

□ 참여자: 이경렬 교수(숙명여대)

□ 토론자: 이진국 교수(아주대)

제2주제 **「형벌론」분야 개정방안**

□ 발표자: 한상훈 교수(연세대)

□ 참여자: 박용철 교수(서강대),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오경식 교수(강릉대), 한영수 교수(아주대)
천진호 교수(동아대),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탁희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자: 김성은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죄수·형벌」 분야 개정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

Ⅰ. 죄수·형벌 분야 개정논의와 개정방향

오늘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법개정연구회의 연구 결과로 발표되는 형법개정안 중 죄수·형벌 분야의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위촉된 10명의 형법 학자들이 6개월여 동안 여덟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죄수·형벌 분야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성안하는 작업을 수행한 내용으로, 형법 제35조 이하 제82조까지 검토한 것이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이 그 동안 8차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와 형벌 분야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선고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회는 본 개정안을 검토·성안하는데 있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민생활의 다변화와 가치관의 다양화, 그리고 우리 형법학에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된 이론과 더불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제도 등의 반영, 나아가 21세기 선진민주국가에 걸맞는 형벌의 정당성과 함께 형벌 목적의 적정한 실현을 개정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죄수·형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죄수와 형벌 분야의 규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수 분야에서는 상습범과 누범의 재고, 포괄일죄 개선, 그리고 경합범 처벌 규정의 보완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형벌 분야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 여부, 징역과 금고형을 자유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등 명예형 규정의 삭제, 일수벌금제도과 벌금형의 분납과 연납제도의 도입,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 도입 여부와 과료제도의 폐지, 몰수제도의 전면 개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제도의 재고, 보안처분의 형법전으로의 이전 등 모두 25개 쟁점에 대해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쟁점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의 제정자료,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입법례 및 1992년 한국형사법학회 형법개정시안,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안, 2007년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의 죄수·형벌개정안과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범죄론 분야의 쟁점과 개정방향 연구보고서 등 매우 다양한 입법참고자료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는 26일

시행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과,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게끔 지난 2월 의안번호 제3888호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인 『형법일부개정안』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수 분야와 형벌 분야의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방안들을 제시한 형법학자들의 문헌들을 모두 분석하면서 이를 최대한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에서 본 연구회는 상습도박죄를 제외한 각칙상의 상습범 규정의 전면 폐지와 함께 누범 규정의 삭제, 그리고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되 정역 부과는 형 선고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경합범 처리방법의 개정,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도입, 구류 및 과료의 폐지와 몰수형의 전면적 개정 등 형벌 분야에 있어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본 연구회의 검토 과정에서 3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다른 쟁점보다도 더욱 심도있게 관련 자료들과 지금까지 제시된 학자들의 견해들을 분석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형사법 학자들의 성명서가 나온 상태에서 학회 소속의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 등의 방법도 제기되었으나 6개월이라는 연구기간의 제한 등으로 인해 학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연구회 내부의 논의과정에서는 근소한 의견차로 존치하기로 정리하였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발표자료집의 분량과 발표 시간의 제한으로 그 동안 검토된 개정안의 요약발표이며, 400여쪽에 달하는 본 연구회의 각 위원들이 검토한 개정안 내용의 전문은 9월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제출하여 12월경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모쪼록 본 연구회가 검토한 죄수·형벌 분야의 개정안이 앞으로의 형법개정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Ⅱ. 죄수 분야 개정안

1. 상습범 규정의 재고

개정안 규정

> 제203조(상습범), 제264조(상습범) 등 각론의 상습범 규정 <삭제>
> 제ooo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도박죄를 제외한 현행 형법의 상습범처벌규정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현재까지 학계에서 주장된 상습범의 폐지론의 근거로 제시된 다양한 논거들과 함께,[1] 특히 상습성 판단기준의 모호성 및 상습성을 근거로 한 형벌가중이 책임주의에 부합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비추어 형법각칙의 상습범처벌규정을 폐지하고, 단지 상습도박은 종래의 개정제안이나 비교법적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2] 물론 보호감호가 폐지된 상태에서 상습범을 폐지할 경우, 특히 다음에 언급할 누범폐지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 상습범(누범)에 대한 기존의 형벌가중 등에 비추어 형사정책적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합리적인 형량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형사정책학회 형법(죄수형벌론)개정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견 중에서는, 개별 상습범 처벌대상 범죄를 현행대로 각칙에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존치할 경우의 형량은 현행 형법처럼 상한을 가중하는 형태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도박죄의 경우에는 상습범이 아니라 목적범의 형식으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상습범가중처벌조항을 유지하자는 의견 중에서는 상습범의 일반요건은 총칙에 규정하고,[3] 각칙에는 개별 상습범의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상습범의 성립요건을 보다 엄격하고 분명하게 규정하자는 입장도 있었다.

2. 누범 규정의 재고

개정안 규정

제35조(누범) <삭제>

현행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4] 이미 기존의 논의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폐지론의 논거와 함께,[5] 특히 누범의 형을 장기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은 책임원칙,

1) 폐지논거로 ① 행위자책임에 근거하고 있어 책임원칙에 반한다, ② 의지박약한 자이므로 오히려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③ 형사정책적 면에서 형의 가중은 해결책이 아니다, ④ 경합범가중보다 오히려 상습범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⑤ 양형사유로 고려하면 족하다는 등의 주장이 있어왔다.

2) 도박 및 상습도박죄의 개정안은 각칙연구회의 논의 참조.

3) 예를 들어 총칙에 "제○○조 (상습범) ① 범죄의 습벽으로 인하여 동종의 범죄를 3회 이상 범한 때에는 상습범으로 처벌한다. ② 상습범으로 처벌할 죄와 형은 각 본조에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각칙의 개별범죄 중 상습범을 처벌할 범죄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4) 동 조항에 대해 현재(2009.9.5.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소송(2009헌마468 등)이 계류중이다.

5) 대표적으로 ① 전범을 기초로 한 후범가중처벌은 헌법 제13조제1항의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다, ② 평등권에 반한다, ③ 전과자라는 신분차별이다, ④ 장기 2배 가중은 가혹하다, ⑤ 행위자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⑥ 일반예방적 관점이 책임주의를 넘어서고 있다, ⑦ 양형현실상 선고형이 법정형의 하한에 집중되어있다, ⑧ 행위자의 개인인격보다 환경에 원인이 있다, ⑨ 형사정책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일사부재리, 과잉금지원칙 등에 부합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점에서 동 조항을 유지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습범폐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호감호 및 상습범규정을 폐지하면서 누범규정까지 삭제하는 것이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경합범관점과 기존의 법정형에서의 양형관점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누범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보안처분 중 특히 보호감호가 폐지된 상태에서 상습범 가중규정과 누범가중규정을 동시에 폐지할 경우, 예를 들어 상습누범 등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인에 대한 적정한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누범규정을 존치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도 현행 형법체계상 누범가중규정의 위치는 적정하지 않고, 향후 형법 제1편 제3장(刑)으로 이동해야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누범을 존치해야한다는 의견들도 현행 형법보다는 누범대상의 범위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누범가중기간도 현행보다 단축하여 누범의 성립범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누범을 존치할 경우에는 가중의 정도에 있어서도 현행의 2배보다는 낮춰 1/2 정도로 가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 판결선고후 누범발각의 재고

개정안 규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삭제>

현행 형법 제36조의 판결선고 후 누범발각규정은 삭제한다. 동 규정에 대한 기존의 폐지주장들이 제시해온 논거와 함께,[6] 형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전과관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해 졌다는 IT기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이 유지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47년 개정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은, 판결확정후 재범이 발각된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누범가중규정(제58조)[7]은 일본 헌법 제39조의 규

한다, ⑩ 법정형의 범위에서 고려하면 된다, ⑪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등이다.

6) 대표적으로 ① 형사소송법은 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거증책임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누범전과를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형을 다시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동 조항은 위헌이다, ②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사정만을 이유로 가중형을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등이다.

7) 재판확정후 재범자라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 제57조와 같이(누범에 대해 장기 2배 가중) 가중된 형을 정

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무죄로 확정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중한 형사상의 책임을 판결확정 후에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미 당시에도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의 불균형, 즉 재판확정 전에 누범사유가 발각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형의 불균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활용 등으로 전과관계의 관리가 용이해졌고, 지문조회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과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IT강국에서 동 조항을 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별개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4. 포괄일죄의 개선

개정안 규정

관련 조항 신설 불요

포괄일죄를 형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아직 포괄일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학계나 판례의 통설 혹은 지배적인 입장이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보안처분(보호감호)의 폐지와 함께, 앞의 개정제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습범이나 누범의 가중조항이 폐지된다고 볼 때, 과연 현재의 포괄일죄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포괄일죄에 관한 명문규정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포괄일죄는 행위자에게 유리하므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나, (상습범·) 영업범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수한 범죄에너지를 가진 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고, 어떠한 유형을 포괄일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아직은 보다 더 논의의 성숙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입법적으로 일본의 경우 1947년 형법개정으로 당시 형법 제55조의 연속범규정을[8]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본형법 제정당시와는 달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강화되는 경향에 따라 다수의 범죄가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이미 국내의 개정제안에서도 포괄일죄의 문제를 죄수판단이 아니

하고, 징역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 구형법과 한국 현행형법과 유사한 조항으로 대만형법(중화민국형법) 제48조도 '재판확정 후 누범이 발각된 자의 처리'라는 표제어하에 "재판확정후 누범이 발각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을 다시 정한다. 단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사면후에 발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조(제47조)에서 누범의 형은 그 본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8) "연속된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죄명에 위반된 경우에는 1죄로 처단한다."

라 기판력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하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포괄일죄의 명문화여부라는 관점하에서는 포괄일죄의 유형 및 인정범위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죄로 처벌해야할 범행과 포괄일죄로 처벌해야할 범행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일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논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보안처분이 폐지되고,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습범 및 누범가중을 폐지할 경우에 이론과 판례가 기존의 포괄일죄를 바라보는 시각 및 죄수판단기준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위원회 내에서는 포괄일죄의 요건을 명문으로 분명히 규정하여 실무에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5. 경합범 처벌 규정 보완

개정안 규정

> 제38조(경합범의 처벌방법)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각 죄에 정한 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 또는 무기자유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 2. 각 죄에 정한 형이 유기자유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죄에 정한 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할 수 없다.
> 3. 각 죄에 정한 형이 벌금형인 때에는 540일수까지 가중한다.
> 4.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자유형이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 ② <삭제>

1) 경합범 가중시 하한 제한 필요여부

경합범으로 되는 수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의 처벌방법에 관한 규정이며 현행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상응하는 규정이다. 현행형법 규정 중 “重한”을 ‘무거운’으로, ‘輕한’을 ‘가벼운’으로, “同種의”를 ‘같은 종류의’로, “異種의”를 ‘다른 종류의’로 고친 것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1호는 수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단하고, 다른 경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은 이에 흡수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비교되는 형이 단지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하고 있는 법정형이 아니라 그 각 죄에 선택형이 있는 경우 그 중에서 처단할 형의 종류를 선택한 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선택된 형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제2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유기자유형으로 같은 종류의 형을 선택한 경우에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그 선택된 형을 가중하는 경우이다. 현행형법과 비교하면 가장 무거운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경우 다른 범죄의 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경합범의 각 죄 가운데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하한이 가벼운 죄의 그것보다 가벼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무거운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족하므로 가벼운 죄에 정한 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다른 형, 즉 가벼운 죄에 정한 형의 하한도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형법 제40조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의 의미를 상한 뿐만 아니라 그 하한도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이른바 전체적 대조주의의 입장). 그리고 과료와 몰수는 각각 독립된 형의 종류로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행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였다.

제3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벌금형으로 같은 종류의 형을 선택한 경우에 그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 현행 형법은 총액벌금형제도 하에서 그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개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서는 일수벌금형의 상한을 360일로 하는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였다. 일수벌금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각칙에서는 벌금액수가 드러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에 대해서는 독일 형법 제54조 제2항 2문과 같이 벌금형의 상한이 360일수임(제40조 제1항)에도 경합범의 경우에는 720일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가중하는 방안, 스위스 형법 제49조 제1항과 같이 경합범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정한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취하되, 가중형의 상한은 그 형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9](제49조 제1항 2문; 이에 의하면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에 대해서도 360일수의 제한을 받음), 그리고 오스트리아 형법 제19조는 일수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경합범의 처벌에는 원칙적으로 가중주의를 취하고 형법 제30조에서 법률에서 정한 형벌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형법의 규정례에 대해서는 1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360일수인데 수죄에 대한 경우에도 그 상한을 360일수로 하여 1죄에 대한 법률의 제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결국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시에 그 상한을 개정법률안이 정한 360일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에 대해서는 2배까지 가중하여 720일수로 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540일수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 개정위원회에서는 종래 벌금형에 대해서도 긍정되는 가중주의의 취지를 충족시켜

9) 프랑스 형법에서도 스위스 형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2-5조 제4항 참조).

벌금형의 법정 상한일수 360일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은 540일수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4호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과 같이 무기자유형만 언급하고 사형을 제외하여 정하는 때에는 제1호와 제4호의 문언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경합범에 대하여 사형과 다른 종류형, 특히 벌금형을 각각 정한 경우, 제1호는 흡수주의에 따라 사형만을 선고하고, 제4호에 의하면 병과주의에 의하여 사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언적 충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4호에서는 현행 형법과 달리 사형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경합범 가중시 하한 제한 필요여부라는 개정논점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경합범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그 하한에 대한 가중도 필요하다는 별개의 견이 있었다. 이에 의하면,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의 합보다 가볍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독일형법 제54조 제2항 제1문을 관련 근거조문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에서는 위의 결과는 우리형법과 달리 전체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형법의 귀결이며, 학계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실무의 태도를 고려하면 경합범의 가중처벌시에 그 하한까지도 가중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 징역·금고 경합범 가중시 중한 형으로 처벌 필요

현행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간주되어 징역과 금고가 경합하여 금고형이 무거운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예컨대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범한 경우에 자유형을 징역과 금고로 구별하며, 또 형의 경중을 규정한 제50조제1항에 의하여 중한 형인 금고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죄에 더하여 과실범을 범한 경우까지 전체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8조 제2항은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금고형이 무거운 때에는 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10]

그러나 자유형을 징역, 금고, 구류와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류는 폐지하고 징역과 금고를 통합하여 자유형으로 통합하는 우리 학회 형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른다면, 현행형법 제38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

10)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집(XIV), 1992년 10월, 72면.

Ⅲ. 형벌 분야 개정안

1. 사형제도의 재고

개정안 규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사형제도의 존치 또는 폐지 논의는 단순히 특정 형벌이 갖는 형사정책적 효과나 형법적인 것에만 국한할 수 없는 신념의 문제가 결부된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의 생명권 중시 및 일반 사회의 정의감과의 부합 그리고 국민 일반 감정 순화의 목적을 이유로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이후[11]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형법 제41조 위헌제청 공개변론에서도 사형제도가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형이 형벌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논의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형존치론 논의의 근거에는 사형의 동해 응보형으로써의 의미, 예방적 효과, 시기상조론 등이 있었고 사형폐지론 논의의 근거에는 사형의 생명권 침해, 사형을 통한 예방 및 위하 목적 실현의 불가능, 오판의 잘못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처럼 사형 존치 및 폐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논의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회에서는 사형제에 존폐 문제에 대하여 폐지 및 축소 의견이 있었으나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하여는 폐지시 각칙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연구회 차원이 아닌 학회 차원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하였고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사형제 존치 또는 폐지에 대한 별개의견으로 사형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 사형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제한하여 존치하자는 것, 사형 선고시 전원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일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 사형 규정은 존치하되 그 집행은 반대한다는 의견,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와 연계하여 배심원 동의시에만 사형 선고가 가능케 하자는 의견, 그리고 사형대상범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1) 헌법재판소 1996.11.28. 선고 95헌바1 결정.

2.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

개정안 규정

관련 조항 신설 불요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사형을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함으로써 사형 선고의 수요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돌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논의되었고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논의를 한 바 있고, 현재의 사형제도 및 무기징역형에 대해 그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12)]

동 제도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 및 형벌의 교육 목적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그동안의 형사법 개정 역사에서도 논의 자체가 없거나 도입에 대한 신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으므로 오히려 사형보다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 형벌일 수 있고, 교정 측면에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형과 무기징역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형법 제72조의 가석방의 요건에서 무기징역의 경우 최소 10년의 가석방 가능 규정을 상향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실무상 최소 기간만을 복역하고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가석방 가능 기간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 및 사형과 무기징역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형법 제72조 제1항의 무기징역에 대한 최소 가석방 가능 복역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또는 2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징역과 금고의 단일화

개정안 규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자유형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12) 광주고등법원 2008.9.17. 선고 2008초기29 판결.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①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자유형
3. ~5. <삭제>
6. 벌금
7.~9. <삭제>
②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자유형) 자유형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자유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한다.

제46조(구류) <삭제>

제67조(자유형) 자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필요한 교정처우를 행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삭제>

자유형 단일화의 문제는 형법개정작업을 할 때마다 제기되어 왔는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수형자의 인격에 적합한 선고와 집행에 의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교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일자유형이 적합하다. ② 징역대상 범죄와 금고대상 범죄의 구별기준인 파렴치성은 가치판단과 관련된 개념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명확한 구별이 불가능하다. ③ 징역과 금고의 구별은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인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다. ④ 사상범 내지 정치범에 해당할만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법정형에는 금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실범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남아있던 금고형의 존재의의도 과실교통사범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교도소의 등장과 함께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⑤ 징역수형자에게는 파렴치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를 어렵게 한다. ⑥ 금고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노역에 종사하고 있다. ⑦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자유형을 단일화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금고·징역을 자유형으로 단일화하고, 정역부과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법관이 자유형을 선고할 때 별도로 정역부과 여부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법관이 피고인의 개선·교화를 위해 정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유형을 선고하면서 정역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역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물론 자유형의 집행 중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정역은 가능할 것이다).

자유형의 하한은 현행과 같이 1월이 적절할 것이다. 1월 미만의 자유박탈을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고, 1월 미만의 자유형을 선고할 정도의 불법내용이라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구류도 폐지하고 법정형으로 구류형이 규정된 범죄에서 구류를 삭제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징역과 금고를 단일화하면서 그 명칭 및 내용과 관련하여 징역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금고로 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유형으로 하면서도 현행법상 징역과 동일하게 정역부과를 자유형의 내용으로 하자는 의견도 가능할 것이다.

4. 유기자유형의 형기조정

개정안 규정

> 제42조(자유형) 자유형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자유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한다.

>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한다.
> 2. 무기자유형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한다.
> 3. 유기자유형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4.~8. (생략)

유기자유형의 상한(단순상한)을 20년 또는 25년으로 상향할 것인가에 대해, 현행 15년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과 20년 또는 25년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2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 이유는, 무기형과 유기형의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보호감호가 폐지되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상습범과 누범까지 폐지하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점이다. 그에 따라 경합범을 가중할 경우의 상한(가중상한) 역시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였다.

일본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여 징역과 금고는 무기 및 유기로 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는 1월 이상 20년 이하(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로 하였다. 그리고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30년으로 하고(제14조 제1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동조 제2항)하였다.

프랑스 형법 제131-1조(중죄의 형벌)는 중죄의 형벌로 1. 무기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2.

3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3.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3.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두고(제1항), 유기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의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13]

무기자유형이 폐지된 국가인 스페인의 경우 유기자유형의 상한이 40년인 반면, 무기자유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독일 15년, 오스트리아 20년, 이탈리아 24년, 네덜란드 20년, 영국 20년으로 되어 있다.[14]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자유형을 감경할 경우의 상한(감경상한)을 30년으로 높이기로 하였다.

유기자유형의 상한을 높이는 것은 유기형의 내용을 무겁게 할 뿐이며, 장기간의 자유박탈로 인해 수형자의 인격상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중형주의는 범죄예방이나 적극적 일반예방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이유로 단순상한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동일한 논리에서 가중상한 역시 현행대로 25년으로 그냥 두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사형·무기자유형을 감경하여 유기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20년 또는 25년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5. 단기자유형의 존폐

개정안 규정

제46조(구류) <삭제>

제68조(금고와 구류) <삭제>

제51조의2(단기자유형의 제한) ①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유형을 과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6월 미만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단기자유형은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가와 그 존폐는 매우 어려운 형사정책적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단기자유형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극히 짧은 형기로는 수형자의 개선·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다시 사회에 나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교정하고

13) 법무부, 프랑스형법, 2008.11, 22면 이하.

14) 법무부, 프랑스형법, 2008.11, 22면 이하.

개선하기 위한 단기자유형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직업상실·가족 및 사회와의 단절·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교정시설의 하위문화에의 동화 등이 나타난다는 점, 단기자유형을 받은 자도 중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형집행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단기자유형은 수형자를 양산하고 이들을 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빈번한 입출소로 인하여 교도관의 업무를 증대시킨다는 점 등이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단기자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이 경우 단기자유형의 기간은 1월 이상 6월 미만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단기자유형의 제한 규정을 둘 경우 구류의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폐지하기로 하였다.

형을 집행함에 있어 미결구금, 구류, 단기자유형 등의 분리수용에 대한 명문을 규정을 두어 범죄오염 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선다면 단기자유형을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단기구금의 충격효과도 의미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6. 명예형 규정의 삭제

개정안 규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자유형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벌금
7.~9. <삭제>

제43조(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의 상실과 정지) ① 사형 또는 무기자유형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자유형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삭제>

명예형으로서의 자격상실이란 범인의 명예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형법상 자격상실은 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은 자격상실의 경우 형의 일종이지만 독립적으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선고의 형의 부수효과일 뿐이므로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명예형으로서의 자격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의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는 선고정지가 있다. 당연정지는 형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자격정지가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된다면 이 규정은 형의 부수효과로서 작용한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형벌의 종류가 아닌 형의 선고에 따른 부수효과 규정을 형법총론에 규정함으로써 개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폐지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자격상실 규정만 폐지하고 자격정지 규정은 존치하면서 자격정지를 형선고의 부가효과로 독자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과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규정을 총론의 형벌에서 모두 폐지하더라도 개별적인 범죄유형에 위임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7.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개정안 규정

> 제69조(벌금)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의 일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 ② 벌금형의 일수 정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1일 평균 수입을 그 기준으로 한다. 1일수의 벌금 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69조의3(대체자유형)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한다.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에 해당한다.
> 제70조(노역장유치) <삭제>
> 제71조(구금일수의 공제) 일수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일수에 상응하는 구금일수를 뺀다.

현행 형법의 벌금형은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범죄인의 불법과 책임을 정확하게 액수로 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벌금총액의 산정에 범죄인의 빈부차를 고려할 수 없어 가난한 자에게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으로 단기자유형으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부자에게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점이 있다. 현재 총액벌금형제도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도입 찬성론의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벌금형 산정방법이다. 이는 불법과 책임이 동일한 행위를 일수로 산정하고 일수정액을 평가할 때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양형상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증진의 측면에서 경제적 능력에 적합한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등한 형벌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대체자유형의 집행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로부터 벌금미납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벌금형 노역장유치처분을 폐지함에 따라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형법제정당시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예: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등)에 의해 경제적 정보 수집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도입의견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면서 그 논거로 일수벌금형 도입의 전제로서 형벌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소득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으며, 일수벌금형의 일수 상한을 3년 이하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다. 또한 벌금미납 시 자유형 대체형은 경한 벌금형 선고가 중한 자유형으로 되는 모순이 있어 노역장유치처분의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8. 벌금 분납제도 도입 여부

개정안 규정

> 제69조의2(벌금의 분납·연납)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명할 수 있다
> ② 전항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현재 벌금은 검찰직접징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의 집행은 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실무에서는 검찰 일반직원이 검찰내부의 관행에 의해 징수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벌금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가형벌권의 확립을 위해 예납제도, 가납명령제도, 징수절차정지제도, 벌금미납에 대한 연체료제도, 벌금의 분납 및 연납제도의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벌금의 분납 및 연납제도는 미국의 몇몇 주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사무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다.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에서 징수금의 일부 지불 및 일부 연기의 가능성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벌금의 지불당사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벌금의 징수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실무상의 필요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분납 및 연납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형법총론 규정의 근거가 필요하다.

벌금분납 및 연납제도의 도입으로 지불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벌금형의 납부율의 향상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된다는 점 등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벌금의 분납과 연납의 선고를 법원이 아닌 검사의 허가로 이를 인정할 경우 집행의 편리함이 인정되어 법원과 함께 검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9.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

개정안 규정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피고인에 따라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보다 오히려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경제적 여건상 벌금납부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경우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중한 형벌인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도 경한 형벌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할 경우 지금까지 피고인의 벌금납부능력을 감안하여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처음부터 징역형을 선고했던 관행을 탈피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규범합치적인 생활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범방지의 효과도 높아진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면 더 큰 범죄예방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력(資力)이 없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후에 벌금미납의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조건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자력이 없는 교통사범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일정시간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되어 자유형보다 경미한 형벌의 집행이 보다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선고유예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굳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10.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부과

개정안 규정

제62조의2(집행유예의 조건)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 또는 수개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 시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명령만 부과할 수 있고, 자유형의 집행유예 시에 제6호 내지 제7호의 명령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감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 또는 외출제한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은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형벌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유예제도는 원래부터 보호관찰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하여 왔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취지도 궁극적으로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회성의 재산박탈(벌금납부)로 형벌의 효력과 임무가 종료되는 벌금형을 통해서는 충분한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금형이 주는 위하효과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가난한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궁핍함을 더하여 줌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벌금형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법관이 벌금형 집행유예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형법은 자유형에 한하여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벌금형의 단순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안겨주어 국가형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벌금형의 집행유예 대상자가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보호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벌효과를 높일 수 있다.

11. 과료의 폐지

개정안 규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과료 <삭제>
  9. 생략
제47조(과료) <삭제>
제69조(벌금과 과료), 제70조(노역장유치),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과료” <삭제>

과료는 벌금과 함께 재산형이다. 벌금과 과료는 50,000원을 기준으로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재산박탈이라는 실체적 측면, 납입기일 등의 절차적 측면, 미납 시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환형처분의 존재 등에서 동일하다. 또한 과료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즉결심판 사건의 급감과 동시에 즉결심판에서의 과료의 선고건수도 급감하여 최근 들어서는 과료 선고건수가 약 3,000~4,00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벌금과 과료를 구별해야 할 실익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같이 벌금과 과료를 구분하는 나라도 없다.

실무상 과료는 거의 모두 즉결심판사건에서 선고되고, 형사범은 거의 없으며,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위반의 사유가 대부분이라서 과태료로 전환하여도 무방하다. 형법위반사범의

경우 과료에 해당하는 극히 경미한 사안은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료 폐지를 반대하는 견해는 실무상 과료의 선고가 거의 이루지지 않는 형사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논거가 설득력이 약하다. 과료 선고가 이루어지는 범죄(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과료 대상 범죄를 대개 과태료 대상이 되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과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소액의 재산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12. 벌금 미납시 사회봉사명령 부과 방안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명령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9523호, 2009.3.25. 제정)이 2009.9.26. 시행예정이어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미납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게 되므로 이 법률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개정여부와 형법전으로의 편입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13. 노역장 유치기간의 재고

현행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어 최장 3년 간 노역장에 유치되게 된다. 이러한 3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하였다. 그런데 벌금형을 기본적으로 일수벌금제도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360일의 한도에서 일수벌금을 부과하고, 가중할 때에도 540일을 넘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18월 정도로 하향조정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노역장 유치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38조와 제69조를 참조하면 된다.

14. 몰수, 추징 개정안

1) 개관

몰수, 추징은 범죄의 수익을 박탈하는 일종의 형벌로 현행 형법에는 제48조와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다. 최근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협약과 특별법에는 몰수, 추징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특별법에 규정된 몰수, 추징에 관한 조문은 형법총칙 개정안에 상당부분 편입하고 일부 내용은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몰수, 추징을 부가형이 아니라 독자적인 처분으로 전환하고, 별도의 장(章)에서 규정하였다. 둘째, 몰수의 대상을 재산상의 이익도 명시하고, 대가물건, 보수물건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셋째,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직접 귀속된 범죄수익이나 상속, 증여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회복을 위한 몰수를 신설하여, 이로 인하여 몰수, 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다섯째, 공소제기가 없어도 요건이 충족되면 몰수, 추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개정안 규정

제3장 형, 몰수, 추징 등

제9절 몰수, 추징

제82조의2(몰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다음 기재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2.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3.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4.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6. 제2호 내지 제5호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범죄수익이라 한다)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범죄수익의 보유, 처분, 변형, 증식에 의하여 얻은 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한다)

3) 개정이유

(1) 독립적 처분성

현행형법상 몰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가적인 형벌(附加刑)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으로 볼 때에는 몰수를 형벌로 규정하여 엄격한 제약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형벌적 성격, 보안처분적 성격, 원상회복적 성격, 부당이익의 환수적 성격 등 그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형벌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장(章)에서 독립적 처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안도 동일한 관점에서 독자적 처분으로 규정하였다.

(2) 범인에 대한 몰수

현행형법은 범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와 제3자가 범행 후 정을 알고 취득한 경

우에 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범인의 경우와 제3자의 경우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형벌적 성격을 유지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익환수적 성격, 보안처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조에 의하여 범인 소유의 물건은 별도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몰수할 수 있다.

(3) 몰수의 대상

몰수는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추상적 권리인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산 자체를 몰수의 객체로 설정할 수 없다는 해석[15]이 가능하다. 판례가 물건이 아닌 권리나 재산상의 이익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판례[16]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를 몰수의 대상으로 판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엄격히 해석할 경우 물건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일본의 경우, 1974년 형법개정초안의 작성과정에서 물건 이외에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범죄, 부패범죄 등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익, 재산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각종 특별법에 신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에는 이미 재산이나 금품 기타 이익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규정은 모든 범죄에도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형법총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물건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몰수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공물건, 생성물건, 취득물건, 대가물건은 물론이고 보수물건도 몰수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이러한 물건들을 각호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범죄수익의 보유, 처분, 변형, 증식에 의하여 얻은 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한다)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

15) 신동운, 형법총론, 774면 등.

16) 대법원 대판 1976.9.28, 76도2607: "1. 수뢰의 목적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융이익일 때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이다. 2. 위의 경우 소비대차의 목적인 금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므로 대여로 받은 금원 자체는 형법 제134조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고,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몰수할 것이다."(판례총람 48-4-4 참조.)

제82조의3(제3자 소유 재산의 몰수)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다음 기재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제82조의2 각호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2.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인 이외의 자에게 직접 귀속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3. 제1호 이외에 공공에 해가 되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될 염려가 있는 제82조의2 각호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단, 범인 외의 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범인 외의 자가 몰수로 인하여 받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한다.

개정이유 :

현행형법상은 공범을 포함한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하는 물건은 범죄 후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범행 이전에 이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소유자가 그 물건이 범행을 위하여 사용된 사정을 알게 된 때 예컨대 도검의 소유자가 타인이 이를 임의로 들고 나가 살인죄·상해죄 등의 실행에 사용한 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또한 제3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도 그 정을 알지 못한다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3자를 위한 사기죄, 제3자뇌물제공죄 등). 상속이나 증여로 제3자의 소유가 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불가능하여 범죄수익을 몰수, 박탈하여 범죄를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범죄이익의 박탈이라는 몰수, 추징의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형벌적 성격을 유지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익환수적 성격(제2호), 보안처분적 성격(제3호)을 채택하였다.

제1호는 현행 형법의 취지를 유지한 것이다.

제1항 제2호는 범죄행위의 이익이 제3자에게 직접 귀속된 경우에도 그 불법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이다. 제3자를 위한 사기죄, 제3자뇌물제공죄 등의 경우에는 제3자가 범죄에 대한 정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제1항 제3호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몰수이다. 제3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여도 장래에 다시 범죄에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적 필요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독일형법, 스위스형법에도 유사한 조문이 있다.

제82조의4(상속, 증여재산 등의 몰수) 몰수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불법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 증여되거나 현저하게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이유 :

신설하는 개정안 제82조의2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의 수익이 직접적으로는 범인에게 귀속되었지만 상속, 증여 등 현저한 저가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러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불법재산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재산범죄, 이득범죄의 유인을 제거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범인과 제3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이미 유사한 조문이 있으며, 미국의 민사몰수(civil forfeiture), 스위스형법 제70조 등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이다.

제82조의5(혼합재산의 몰수)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혼합된 경우에 그 불법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혼합에 의하여 생긴 재산(혼합재산) 중 그 불법재산(당해 혼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이유 :

불법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에 그 불법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혼합에 의하여 생긴 재산(혼합재산) 중 그 불법재산(당해 혼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다.

제82조의6(추징 및 폐기) ① 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5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82조의3 제3호 제외)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이유 :

제1항은 몰수대상물을 몰수하는 것이 그 점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주거용 주택이나 필수적인 자동차 등)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몰수에 대신하여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추징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 규정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참고하여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제2항은 현행 형법의 필요적 폐기를 임의적 폐기로 개정하였다. 현행형법 제48조 제3항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와 폐기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17] 몰수와 폐기 중 적절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제82조의7(몰수 등의 특례) 몰수, 추징 또는 폐기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개정이유 :

현행형법 제49조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다. 판례는 선고유예를 하면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아가 공소기각이나 면소 등을 형식재판을 선고할 경우에도 몰수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은 몰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판례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18] 기타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19]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할 필요성이 없더라도 물건은 몰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몰수, 추징을 독자적 처분으로 인정한다면 피고사건의 기소여부와 무관하게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면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이 기소유예로 된 경우,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가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무죄가 된 경우 등에도 그 대상물은 몰수, 추징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다.

공소제기와 관계 없이 몰수, 추징, 폐기라는 독자적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치료감호의 청구와 같이 별도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82조의8(몰수, 추징의 효과) 몰수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국고에 귀속한다.

17) 예를 들어, 대법원 1961.2.24. 4293형상759;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인 국고 수표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선고를 하지 않고 폐기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다.”

18)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700 판결

19)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556 판결

개정이유 :

1992년 법무부 개정안과 유사하게 개정안은 몰수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효력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형법에는 몰수, 추징의 법적 효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규정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82조의9(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6에 기재된 물건 또는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의 성질, 타 범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개정이유 :

개정안 제54조의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제6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설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을 직접 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통하여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피해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몰수, 추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82조의10(몰수 및 추징의 시효) ① 몰수, 추징, 폐기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개정이유 :

공소시효는 형벌에 관한 것이므로 형벌의 성격을 배제한 몰수, 추징은 원상회복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다 장기간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철저한 이익박탈과 범죄예방의 이념에 조응한다. 현행형법의 3년보다 2년 연장하여 5년을 몰수, 추징의 시효로 개정한다.

독자적 처분인 몰수나 추징의 청구와 관련된 시효는 절차법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15. 책임주의와 양형

개정안 규정

제51조(양형의 기준) 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②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지능, 성격, 경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5. 범인의 개선과 재사회화 가능성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범죄의 성립 여부 뿐만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책임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양형의 일반기준으로 책임원칙을 선언함에 있어서 '양형은 책임을 기초로 한다'고 할 것인가, '양형은 책임에 의한다'고 할 것인가 또는 '양형은 책임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양형은 책임에 의한다' 또는 '양형은 책임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양형책임 이외에 예방의 목적을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양형은 책임을 기초로 한다'와 '책임을 한도로 한다'는 전자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 예방의 목적을 고려할 수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책임이 형의 상한을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이라는 규범적 판단과 예방의 필요성이라는 기능적 판단이 동시에 형벌을 근거지우면서, 책임에 의하여 제한된 상한 내에서 예방적 고려에 의한 책임의 경중이 평가되고, 예방적 고려에 의하여 책임으로 제한된 하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형사법학회의 형법개정시안 제44조 제1항과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자복 규정의 보완

개정안 규정

제52조(자수, 자복) ②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권자, 고발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현행 형법 제52조 제2항은 자복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는데,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권자나 고발권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것도 수사기관 아닌 자에게 범죄를 고백한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권자나 고발권자에게 범죄를 고백하는 경우도 자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2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 제52조 제1항의 자수 감경 규정만 두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자복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제52조 제2항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양형사유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17. 법률상 벌금 감경 제도 보완

개정안 규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일수의 2분의 1로 한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벌금의 다액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의 형태를 보면 기준액의 '2배 내지 5배' 또는 '5배 내지 10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해당액을 벌금한도로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 등 감경을 거듭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 그 감경에 의하여 그 상한만이 내려갈 뿐 하한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벌금 기준액의 '2배 이상 1.25배 이하' 혹은 '5배 이상 2.5배 이하'가 당해 벌금해당액으로 되어 이 경우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벌금액의 범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기이한 결과로 되거나, 당초의 하한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게 되어 당초의 하한인 기준액의 '2배' 또는 '5배'라는 정액형으로 되어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이론적으로도 현재 이설 없이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액이란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의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간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문상의 다액이란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벌금과 과료에 있어서 다액을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금액'이라는 표현을 일본 형법 제68조 제4호와 같이 '다액 및 소액'으로 표현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일수벌금형을 도입하는 개정안으로는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18.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개정안 규정

>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자유형 또는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구금일수에 1일은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에 관한 유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헌법재판소 2009.6.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으로 인해 재정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판결 선고 이전에 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형기에 통산하는 것을 허용할 만큼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결구금은 무죄추정원칙의 예외적 상태로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구속 피고인은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불구속 피고인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인데, 나아가 유죄판결 확정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이 산입된다면 사실상 구금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자유형을 집행받는 피고인에 비하여 다시 한번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은 미결구금의 이러한 본질

을 충실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19. 선고유예제도의 제고

개정안 규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5년까지의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선고유예의 조건)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 또는 수개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명령만 부과할 수 있고, 자유형의 선고유예 시에 제6호 내지 제7호의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감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선고를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 또는 외출제한명령은 선고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그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의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이유 :

첫째, 징역과 금고의 통합, 자격형의 폐지, 그리고 일수벌금형의 도입에 따라 선고유예의 요건을 자유형 또는 180일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다.

둘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요건은 법관의 도덕적 감수성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변경한다.

셋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상한을 180일수의 벌금형으로 제한한다.

넷째, 일률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 선고유예의 기간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결격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내의 고의범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인정한다.

여섯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필요에 상응하는 조건을 다양화한다.

일곱째, 선고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한 실효요건을 고의로 범한 죄로 자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선고유예 후 전과발각에 의한 실효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대해 별개의견으로는 첫째, 360일을 상한으로 하는 일수벌금형을 도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에 대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만 허용하고 집행유예를 허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고유예기간을 종래와 같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고 전과발각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규정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20. 집행유예제도의 제고

개정안 규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집행유예의 조건)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 또는 수개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 시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명령만 부과할 수 있고, 자유형의 집행유예 시에 제6호 내지 제7호의 명령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감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 또는 외출제한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거나 집행유예의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이유 :

첫째, 징역과 금고를 자유형으로 통합하고 일수벌금형을 도입하는 것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을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다.

둘째, ‘참작’이라는 표현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라고 수정한다.

셋째, 학계의 다수의견을 반영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한다.

넷째, 결격기간 내의 고의범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인정한다.

다섯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필요에 상응하는 조건을 다양화한다.

여섯째, 전과발각에 의한 실효규정을 폐지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일수벌금형을 도입할 경우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만 허용하고 집행유예를

허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과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집행유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 형의 소멸제도

개정안 규정

형 법

제81조(형의 실효) 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3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은 10년
2. 3년 이하의 자유형은 7년
3. 벌금은 3년
4. <삭제>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복권) <삭제>

형의 소멸은 형의 선고에 수반되는 법률상 효과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현행 형법은 재판상 실효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당연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상 요건은 달리하지만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두 개의 법률에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형소멸제도가 갖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형법전에 당연 실효와 재판상 실효가 함께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형법 제81조에 당연실효규정을 편입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안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자유형으로 단일화하기로 함에 따라 제81조 제1항 제1호와 2호의 '징역 또는 금고'를 '자유형'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수형자 재사회화의 역기능 등 형사정책적 관점을 고려할 때 구류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하에서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동조 제4호의 구류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과료도 재산형이라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없고 형벌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과료를 폐지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재산형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과료를 형벌에서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동조 제4호의 과료 역시 삭제하기로 하였다.

명예형은 형의 부수효과에 불과하므로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현행 형법 제82조의 복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기자유형의 경우 가중하게 되면 현행 형법상 최고 25년(개정안의 경우 최고 30년)까지 가능한데 현행법과 같이 3년 이상의 자유형에 모두 동일하게 형집행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 따라서 10년 이상의 자유형과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형, 3년 미만의 자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20년, 10년, 5년의 형집행 소멸시효를 두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실효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실효를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실효기간 이전에 행위자의 사회생활상의 법적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가능한 빠르게 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재판상 실효는 당연실효 보다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재판상 실효로 인하여 전과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이후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시 전과의 고려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당연실효 기간 이전에 사회복귀를 해야할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2.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전 편입방안

개정안 규정

> 제○○조(보안처분) ① 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행위, 장래에 예상되는 범죄행위 그리고 그 위험성의 정도와 비례하여야 한다.
> ②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치료감호
> 2. 보호관찰
> 3. 전자감독

보안처분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사적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형벌과 함께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재범위험성이 보안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형벌의 법치국가적 한계가 책임이라고 한다면, 보안처분의 법치국가적 한계는 비례성원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안처분을 정당화시키고 한계지우는 지도원리로서 비례성원칙이 형법상 명문화되어야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내용에 재범위험성과 비례성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보안처분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치료감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치료감호・보호관찰・전자감

독을 형법상의 보안처분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박탈 내지 제한적 처분이 형사적 제재로서의 보안처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동 개정안은 누범 및 상습범에 대한 형가중규정이 형법상 기본원칙인 행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근거 하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형가중규정을 폐지하게 되면 상습성을 지닌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로 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위험성에 근거한 보안처분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연쇄살인과 같이 사회적 위험성을 고도로 높이는 중범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치국가적 정당성을 갖춘 보호감호제도가 도입된다면 피해자와 시민 일반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직업적인 누범 및 상습범과 같은 사회적 위험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그리고 형사정책의 최후의 긴급조치라는 최후의 보루로서 보호감호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20] 따라서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대체입법 없이 사라진 보호감호처분을 전면 재구성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의 비판적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시점에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은 폐지 당시와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20) 김일수, 사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2003, 19면.

<죄수·형벌 분야 개정안 규정비교표>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51조(누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까지의 기간에 고의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제52조(누범의 처벌) 누범의 형은 그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	<삭제>	<삭제>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53조(경합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합범으로 한다. 1.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범죄 2. 자유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재판확정전에 범한 죄	제53조(경합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합범으로 한다. 1.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범죄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재판확정전에 범한 죄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자유형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제54조(경합범의 처벌예) <삭제> → 개정이유 : 사형 폐지 및 단일자유형을 채택한 결과	제54조(경합범의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각 범죄의 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제38조(경합범의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각 죄에 정한 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 또는 무기자유형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범죄의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범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범죄에 정한 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할 수 없다. 3. 각 범죄의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거나 과료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금고형이 무거울 때에는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유기자유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죄에 정한 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할 수 없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벌금형인 때에는 540일수까지 가중한다. 4.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자유형이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삭제>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제36조(형의 종류) <삭제>	제36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정지 5. 벌금	제41조(형의 종류) ①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자유형 3.~5. <삭제> 6. 벌금 7.~9. <삭제>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6. 구류 7. 과료	②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제37조(자유형) 자유형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다만 자유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0년까지로 한다.	제37조(징역, 금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제42조(자유형) 자유형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다만 자유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한다.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없음	제38조(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 상실과 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인이나 피선거인이 되는 자격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	제43조(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의 상실과 정지) ① 사형 또는 무기자유형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자유형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제39조(형의 선고와 자격정지) ① 자	제38조(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 상실	제44조(자격정지) <삭제>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유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에 기재한 자격이 정지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인이나 피선거인이 되는 자격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자유형을 선고할 때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정지의 기간은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과 정지)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을 때까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1조(구류) <삭제>	제41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6조(구류) <삭제>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	제43조(형의 경중) <삭제>	제43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36조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서 삭제> ② 같은 종류의 자유형은 장기의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다액이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소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긴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가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제44조(양형의 기준) 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지능, 성격, 경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5. 범인의 개선과 재사회화 가능성 ③ 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범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4조(양형의 기준) 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 ②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지능, 성격, 경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③ 사형의 선고는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④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양형의 기준) 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지능, 성격, 경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5. 범인의 개선과 재사회화 가능성
<없음>	제39조(단기자유형의 제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유형을 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미만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다.	<없음>	제51조의2(단기자유형의 제한) ①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유형을 과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6월 미만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② 제1항에 의한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45조(자수·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권자, 고발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52조(자수·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권자, 고발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제46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기자유형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으로 한다. 2. 유기자유형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3.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최고일수의 2분의 1로 한다.	제46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5.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6.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한다. 2. 무기자유형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한다. 3. 유기자유형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5. <삭제>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일수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의 2분의 1로 한다. 7.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의 2분의 1로 한다. 7.~8. <삭제>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0조(미결구금일수의 통산) ① 미결구금일수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자유형 또는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금일수에 1일은 자유형 또는 벌금에 관한 유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0조(미결구금일수의 통산) ①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자유형 또는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금일수에 1일은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에 관한 유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8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44조제2항(현행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8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44조제2항(현행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5년까지의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의2(선고유예의 조건)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 또는 수개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명령만 부과할 수 있고, 자유형의 선고유예 시에 제6호 내지 제7호의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감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그 기간은 1년이상 2년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선고를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가택구금명령 또는 외출제한명령은 선고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그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그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그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범한 죄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의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유예기간중 범한 죄로 1년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 특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유예기간중 범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특히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후 3년까지의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보호관찰)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한다.	제63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의2(집행유예의 조건)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 또는 수개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 시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명령만 부과할 수 있고, 자유형의 집행유예 시에 제6호 내지 제7호의 명령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감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 또는 외출제한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범한 고의의 범죄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삭제>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거나 집행유예의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소할 수 있다.			
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자유형) 자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고 기타 필요한 교정처우를 행한다.	제68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고 기타 필요한 교정처우를 행한다.	제67조(자유형) 자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필요한 교정처우를 행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내에 구치한다.	제69조(금고와 구류) <삭제>	제69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필요한 교정처우를 행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삭제>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벌금)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한다. ③ 전항의 경우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역장유치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과할 수 있다.	제70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한다.	제69조(벌금)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의 일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 정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1일 평균 수입을 그 기준으로 한다. 1일수의 벌금 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제69조의2(벌금의 분납·연납)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3(대체자유형)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한다.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에 해당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노역장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을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뺀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뺀다.	제71조(구금일수의 공제) 일수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일수에 상응하는 구금일수를 뺀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83조(시효의 중단) ① 자유형의 시효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를 체포한 때에 중단된다. ② 벌금의 시효는 그 집행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83조(시효의 중단) ①사 형, 징역, 금고와 구류의 시효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를 체포한 때에 중단된다. ② 벌금과 과료의 시효는 그 집행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① 사형과 자유형의 시효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를 체포한 때에 중단된다. ② 벌금의 시효는 그 집행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4조(형의 실효) ① 수형자가 자유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효력을 상실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은 10년 2. 3년 이하의 자유형은 7년 3. 벌금은 3년	제84조(형의 실효) 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7년 3. 벌금은 3년 4. 구류와 과료는 1년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고 피해의 배상 기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	제81조(형의 실효) 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3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은 10년 2. 3년 이하의 자유형은 7년 3. 벌금은 3년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다.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1조(자격의 회복) 삭제	제85조(자격의 회복)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경우에 특히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82조(복권) <삭제>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관련 규정 없음. 이하 같음>	**제3장 형** **제11절 몰수** 제86조(몰수) ① 범인이 소유하는 다음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자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3장 형, 몰수, 추징 등** **제9절 몰수, 추징** 제82조의2(몰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다음 기재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2.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3.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4.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6. 제2호 내지 제5호의 물건 또는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② 범인이 소유하지 아니하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은 공공에 해가 되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할 수 있다. 제90조(보상)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물권을 취득한 물건을 몰수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이 범죄행위에 제공됨에 있어서 범인 외의 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그가 정을 알고서 그 물건, 물권 또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상의 이익(범죄수익이라 한다)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범죄수익의 보유, 처분, 변형, 증식에 의하여 얻은 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한다) 제82조의3 (제3자 소유 재산의 몰수)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다음 기재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제82조의2 각호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2.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인 이외의 자에게 직접 귀속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3. 제1호 이외에 공공에 해가 되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될 염려가 있는 제82조의2 각호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 단, 범인 외의 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범인 외의 자가 몰수로 인하여 받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한다. 제82조의4 (상속, 증여재산 등의 몰수) 몰수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불법재산)이 범인 이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외의 자에게 상속, 증여되거나 현저하게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82조의5 (혼합재산의 몰수)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혼합된 경우에 그 불법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혼합에 의하여 생긴 재산(혼합재산) 중 그 불법재산(당해 혼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48조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87조(추징과 폐기) ① 제86조에 기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82조의6(추징 및 폐기) ① 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5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82조의3 제3호 제외)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제88조(몰수 등의 특례) 몰수, 추징 또는 폐기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82조의7(몰수 등의 특례) 몰수, 추징 또는 폐기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규정 없음		제89조(몰수의 효과)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2조의8(몰수, 추징의 효과) 몰수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국고에 귀속한다.
규정 없음			제82조의9(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6에 기재된 물건 또는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의 성질, 타 범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제91조(추징의 시효) ① 추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제83조 제2항(시효중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2조의10(몰수 및 추징의 시효) ① 몰수, 추징, 폐기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 시효는 강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3.~5. (생략)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규정 없음	제91조(비례성원칙) 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행위, 장래에 예상되는 범죄행위 그리고 그 위험성의 정도와 비례관계에 놓여있지 않으면 부과될 수 없다 제97조(치료감호) ② 치료감호는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료되어 법원이 종료결정을 한때까지로 한다. 다만,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가출소) ①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감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의하여 가출소될 수 있다. ② 가출소된 자는 법원에 의하여 감호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01조(치료위탁)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법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친족 기타의 자에게 치료위탁될 수 있다.	제92조(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 제93조(보호감호의 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바은 후 다시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제2편 각칙의 다음 각 장에 규정에 죄를 범한 때 가.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나. 제6장 협박의 죄 다.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조(보안처분) ① 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행위, 장래에 예상되는 범죄행위 그리고 그 위험성의 정도와 비례하여야 한다. ②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치료감호 2. 보호관찰 3. 전자감독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라.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마. 제9장 강요의 죄 바. 제10장 강간과 추행의 죄 사. 제15장 절도와 강도의 죄 아. 제16장 사기와 공갈의 죄 자. 제18장 장물에 관한 죄(과실범을 제외한다) 2. 제1홍에 기재한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제1호에 기재한 죄를 범한 제94조(형기의 계산) 제93조 제1호의 형기의 계산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형기는 선고형으로 한다. 사형 또는 무기형을 감형한 때에는 최초로 감형한 형기로 한다. 2.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무거운 때에는 선고형의 2분의1을 형기로 하되,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제95조(보호감호의 내용) ① 보호감호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교화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보호감호는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6조(보호감호의 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물질 또는 알코올을 식음·흡입·흡연 또는 주입하는 습성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그 습성이나 중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제98조(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경합) 보호감호와 제96조 제1홍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제99조(가출소) ①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감호행상 또는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출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출소여부는 보호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개시후 1년 마다,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개시후 6월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가출소된 자는 행정처분으로 감호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감호집행의 면제여부는 가출소후 6월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제100조(가석방과 보호감호) 보호감호가 선고된 수형자가 가석방 된 후 그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남은 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가출소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감호의 집행순서 및 방법) ① 형과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동시에 집행한다. ② 형과 보호감호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③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한 보호감호만을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집행한다. ④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⑤ 제96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2호의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⑥ 형과 동시에 선고된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108조(감호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을 때까지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109조(감호의 시효) ①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감호의 시효는 감호를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1. 보호감호와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는 10년 2.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는 7년 ③ 시효는 감호의 집행정지 또는	

현행 형법	형사법학회 개정시안(1992년)	법무부 개정법률안(1992년)	개정안
		가출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시효는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그 집행을 위하여 구속한 때에 중단된다.	

<상습범 규정>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아편에 관한 죄)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행, 상해 등)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 폐지 (개별각칙규정에 따라 해결)	원칙적 폐지 (도박죄 자구수정, 유지) 제330조(도박) ① 재물로서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한때 오락정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상습자인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 폐지 (도박죄 자구수정, 유지) 제○○○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 부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Ⅰ

사회 : 이용식 교수 (서울대,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제3주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분야 개정방안

□ 발표자: 이동희 교수(경찰대)

□ 참여자: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김태명 교수(전북대)
이호중 교수(서강대)

□ 토론자: 강형민 검사(동부지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 분야 개정방안

이동희, 정현미, 김태명, 이호중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이하 '개정시안'이라고 함)의 형법 제2편 각칙은 현행형법의 체제를 수정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제1장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배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있어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를 제1장에서 제5장에 배열하고, 이어서 자유에 대한 죄를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7장 협박과 강요의 죄,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9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개정시안에서는 현행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된 죄를 협박의 죄와 동일한 장에 통합하여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의 다음에 규정한 것이다. (제10장 이하 생략)

한편, 형법 제1편 총칙의 죄수·형벌론에 대한 연구팀의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현행형법 각칙상의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자격정지 병과규정을 본 개정시안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하였다(단, 각칙의 상습도박죄만은 존치).

제1장 살인의 죄

현행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장이다. 현행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제251조(영아살해)를 삭제하고, 제252조 제2항(자살교사·자살방조)과 제255조(예비·음모)의 법정형을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의 하향하였다. 그리고 자격형을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를 삭제하였다.

제101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동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는 삭제하였다.

존속살해죄 등 존속대상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삭제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유형이다. 현행 형법상 '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되는 유형으로는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이외에도 존속상해죄(제257조 제2항), 존속중상해(제258조 제3항), 존속상해치사죄(제259조 제2항),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중)치상·치사죄(제262조), 존속유기죄(제271조 제2항, 존속중유기죄(제271조 제4항),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제275조 제2항 1문 및 2문), 존속체포감금죄(제276조 제2항), 존속중체포감금죄(제277조 제2항), 존속에 대한 특수체포감금(제278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존속(중)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 제2항),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 존속에 대한 특수협박죄(제284조) 등이 있다. 현행 형법이 존속을 행위객체로 한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직계비속의 패륜이라는 반윤리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학설상으로는 특히 존속살해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견해 대립이 이어져왔다. 한편, 이 존폐문제와는 별도로 가중처벌 규정을 존치하더라도 각 죄명별로 통상범죄와 존속대상범죄의 형량가중비율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러한 가중형량의 불균형을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은 이미 1941년에 존속살해죄(제217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일본은 1995년 형법개정시에 존속살해죄(개정전 일본형법 제200조)를 비롯하여 존속상해치사죄(동 제205조 제2항), 존속유기죄(동 제218조 제2항), 존속체포감금죄(동 제220조 제2항) 등의 존속대상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이외에 존속대상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프랑스형법과 대만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회에서는 존속살해죄를 포함한 존속대상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입법론으로 ①이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②그대로 존치하는 방안, 그리고 ③존속살해죄만을 폐지하거나 그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는 방안—존속살해죄의 경우에는 다른 존속대상범죄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높아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비속이 오히려 동정을 받아야 할 사례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이 검토되었다.

위 ③의 안은 존속살해죄만을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을 현재보다 낮추어 작량감경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면 결국 보통살인죄와 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법정형을 규정할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죄명별로 가중비율이 불일치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위시한 형법의 체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 ②의 안

1) 참고로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의 논의과정에 있어 당초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안은 존속에 대한

은 우리의 전통된 법률문화를 중시하고 존속에 대한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 아직까지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분에 의한 차별 등의 위헌론의 비판적 논거를 비롯하여 폐지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향이 점차 이를 삭제하거나 형벌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입법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진보적인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존속살해죄와 같이 법정형이 하한이 기본범죄보다 높은 경우에는 존속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비속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법정형의 폭이 넓어 법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우리 형법의 특성상 기본범죄의 법정형으로도 실제 존속에 대한 범죄 사례에서 요구되는 형벌은 대체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2] 현행 형법이 직계족손이 비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특별히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존속대상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영아살해죄의 삭제

현행형법 제251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특히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해석론으로 보통살인죄보다 경하게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별하여 ①직계존속의 명예구제 때문에 책임이 감경된다는 설, ②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이상 또는 흥분상태 때문에 책임이 감경된다는 설의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후자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지만, 행위주체가 '생모(生母)'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자의 견해를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아살해죄에 대한 입법론으로는 아애 본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와 존치시키되 주체를 생모로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영아살해죄를 살인죄의 감경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입법례로서는 오스트리아형법

범죄의 형을 가중하는 다른 규정은 유지하더라도 존속살해죄의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이었다(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992, 120면). 비속을 동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당시 형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속살해죄만을 삭제하는 것은 체계상 모순된다고 보아 이를 존치하기로 하였고, 다만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기존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존속대상범죄의 법정형은 기본범죄의 2분의 1 정도를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개정안은 1995년 3차 개정시 입법화되었다.

2) 존속살해죄의 처벌실태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결과(최인섭・김지선,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에 따르면, 1990~1994년 사이에 보통살인과 달리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실제 선고형량은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제79조, 스위스형법 제116조, 대만형법 제274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외국입법례는 공히 행위주체를 '모(母, Mutter)'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독일형법은 종래 제217조에 이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8년 1월 26일자 개정을 통해 이를 삭제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1880년의 구형법이나 1907년의 현행형법에서는 영아살해죄의 규정이 없고, 다만 1940년의 개정형법가안 제337조에서는 "직계존속이 일가(一家)의 치욕을 은혜하기 위하거나 양육을 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그 밖에 특히 유서(宥恕)해야 할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영아살해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이후에 성안된 일본의 형법전면개정안인 1961년의 개정형법준비초안이나 1974년의 개정형법초안에서는 삭제되었다. 논의과정에서 영아살해를 일률적으로 감경유형으로 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존중,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의 견지에서 부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합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형법에서 영아살해를 경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찾아 보기 어렵고, 일본형법을 의용했던 구형법시대에도 영아살해죄의 규정이 없었으나 1953년 형법제정시에 비로소 영아살해죄의 규정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형법제정시 본 규정을 둔 배경에는 당시의 사회상황이 6·25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곤궁상태와 전쟁 중의 강간 등으로 인한 부녀자들의 원치 않은 출산이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던 위 일본의 1940년 개정형법가안의 영아살해죄 규정이 조문의 유사성으로 보아 입법에 참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

연구회에서는 입법연혁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형법 제정시 고려되었던 시대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차이가 있고, 유독 '영아'에 대한 살해에 대하여만 책임감경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모습은 영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형법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전근대적인 형법관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여지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객체에 포함될 수 있는 영아는 오히려 더욱 보호되어야 사회적 소수약자라는 점과 영아살해에 대한 감경이 사회공동체에 불법의식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형법이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아살해죄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영아살해죄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보통살인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행하면 감경해야할 사안에 있어서 형벌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며, 역으로 비록 모(母) 등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통살인죄에서 요구되는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3) 형법초안에서는 '가문(家門)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라고 되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문의'라는 표현은 봉건사회에서 말하는 가문이라는 느낌을 가지므로 삭제한 바 있다. 신동운,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445면·472면 참조.

고살(故殺)과 모살(謀殺)의 구분에 따른 중살인죄의 도입 여부

현행 형법은 제24장 살인의 죄의 장에서는 기본유형으로 보통살인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중유형으로는 존속살해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이외의 장에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강간살인죄(제301조의2,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인질살해죄(제324조의4,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도살인죄(제33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상강도살인죄(제340조 제3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특별법상에도 보복 등 목적의 살인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중살인죄(모살)와 보통살인죄(고살)를 구분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독일형법, 프랑스형법, 오스트리아형법, 스위스형법, 미국형법 등을 들 수 있다.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도 무엇이 그 기준인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합리적인 구분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불법과 책임의 내용에 따라 보통살인죄와 중살인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또한 중살인죄의 신설을 통하여 특별법상의 살인죄의 가중처벌 유형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한편,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의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반대논거를 바탕으로 중살인죄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연구회에서는 중살인죄와 보통살인죄를 구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이 때문에 오히려 형벌권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 중살인죄를 도입할 경우 중살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무거운 형벌을 과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관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살인죄에 대해서만 불법을 세분하고 책임에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현행법상으로도 중살인죄에 해당하는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살과 모살의 구분입법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제10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52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개정시안에서는 제2항의 자살의 교사 및 방조의 법정형을 현행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하였다. 현행형법은 자살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교사·방조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법

정형을 촉탁·승낙살인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52조 제2항).

연구회에서는 자살교사·방조죄의 존치여부와 관련하여 교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방조도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이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직 우리 법공동체의 인식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자살교사·방조죄를 존치할 경우 그 법정형을 촉탁·승낙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록 촉탁이나 승낙을 받았다고 하지만 직접 살해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교사·방조를 통해 자살을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해 준 소극적인 공범적 행위와 불법의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 제10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102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101조의 예에 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나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범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행형법 제253조와 같은 내용이다.

> 제104조(미수범) 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살인(제101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제102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103조)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형법 제254조와 같은 내용이다.

> 제105조(예비·음모) 제101조 또는 제10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살인(제101조) 및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103조)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현행형법 제255조에 해당한다. 현행형법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시안에서는 상해죄의 법정형과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고 선택형으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하였다.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현행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장이다. 현행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제258조 제3항(존속중상해), 제259조 제2항(존속상해치사),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등의 존속대상범죄 가중처벌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상습범 가중처벌과 자격형을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264조(상습범)와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도 삭제하였다.

한편, 형사특별법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의 관련규정을 형법전에 흡수하여 특수상해죄를 신설하고, 특수폭행죄에 합동범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 제106조(상해)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동조 제2항의 존속상해죄는 삭제하였다. 한편, 동조 제3항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상해죄(개정시안 제107조)의 신설에 따라 별도의 조문(동 제108조)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 제107조(특수상해) ①2인 이상 합동하여 제10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06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 폭처법은 제2조 제2항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하는 상해, 제3조 제1항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 단체나 집단의 가장하여 위력을 보인 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가중적 유형을 두고 있다. 본조는 위 폭처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을 형법전에 흡수하여 특수상해죄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가 합동범에 있어서의 '합동하여'와 같은 의미라고 보는 판례를 태도를 반영하여 형법전에서의 통일성을 기하였고, 제3조 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인 상해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삽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있어 '휴대하여'의 의미를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그 처벌범위를 실제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취지에서 '이용

하여'로 고쳤다.

아울러 법정형은 합동범의 경우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을 차등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각칙 전체적으로 양자의 법정형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제108조(미수범) 제106조 및 제10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제106조)와 특수상해죄(제107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현행형법 제257조 제3항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면서 특수상해죄의 미수범 처벌을 추가하였다.

제109조(중상해) ①사람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기타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형법 제258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동조 제3항의 존속중상해죄는 삭제하였다. 제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를 "사람을 상해하여"로 표현을 고쳤고, 제2항에서는 "기타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불구의 개념에 포함되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제110조(상해치사)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59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동조 제2항의 존속상해치사는 삭제하였다.

제111조(폭행) ①사람을 폭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동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삭제하였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자"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 제112조(특수폭행) ①2인 이상 합동하여 제111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11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형법 제261조에 상응하는 규정이며, 제1항에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합동범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 제113조(폭행치사상) 제111조 또는 제11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및 제110조의 예에 의한다.

현행형법 제262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형법 제263조(동시범), 제264조(상습범),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는 삭제하였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삭제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는 일본형법 정도를 들 수 있다. 일본형법 제207조는 ‘동시상해의 특례’로서 다수인이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각각의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그 상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40년 개정형법가안을 및 이후의 전면개정안에서도 모두 존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이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형법 제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고 실무적으로 2인 이상이 가담한 경우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예외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를 이를 긍정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법리에 반하며, 무정추정의 원리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리,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의 경우, 그 심의과정에서 상해죄에 관하여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거증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의 의한 결과인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일본의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앞선 1991년 형사법학회 개정시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작성된 바 있다.

연구회에서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전향적인 입법이고,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실무적으로는 단순상해죄뿐만 아니라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와 같은 사망을 결과를 초래한 중대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적용하고 있어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현행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하는 장이다. 형사특별법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상의 죄 중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형법전에 흡수하였다.

> 제114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5조(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6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3개조는 현행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와 같은 내용이며, 다만 각 조의 표현 중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고쳤다.

제117조(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7년 12월 21일자로 특가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동법 제5조의11)를 그대로 형법전에 흡수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신설규정의 조문위치를 '상해와 폭행의 죄'의 장에 두는 안도 검토되었으나(일본의 입법례), 본죄의 성격상 본장에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10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규정은 개정시안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제24장 교통방해의 죄에 흡수하기로 하였고, 동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형법전에 흡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4장 낙태의 죄

현행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모자보건법의 낙태의 허용한계를 형법에 편입하였고, 현행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70조 제4항(자격정지병과규정)을 삭제하고, 영리낙태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신설하였다.

제118조(낙태) ①임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임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69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개정시안에서는 낙태죄의 주체로서 '부녀'대신에 '임부'로 하였다. 婦女(며느리 婦, 계집 女: 남의 아내가 된 여자, 부녀자, 일반 여자)란 용어보다 '妊婦'가 자기낙태의 주체를 명확히 표현하므로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119조(낙태의 허용범위) ① 의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3. 제153조 내지 제162조, 제164조 및 제165조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②제1항의 낙태는 임신한 날부터 24주내에 하여야 한다.

현행법체계는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시안에는 모자보건법의 낙태의 허용한계를 형법에 편입시켰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허용한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형법에 금지규정과 허용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양자가 뚜렷이 대비되어 일반인에게도 준수해야 할 규범을 명백히 부각되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낙태의 허용한계에 대하여 사유방식의 유지의 경우 임신초기의 일정한 기간동안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방식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한방식으로 가는 것은 낙태자유화의 외관이 더 뚜렷이 부각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아 현행법의 사유방식을 유지하면서 허용범위의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허용사유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적 허용사유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형사법학회 개정위원회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들어 다수의견이 반대하여 현행모자보건법의 허용범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엄격한 낙태법이 낙태예방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개정시안대로 유지한다면 현실을 도외시 하는 법으로 남을 우려는 있다. 허용기간의 문제는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허용기간이 임신 28주를 24주로 수정되어 개정시안에서도 모든 사유의 경우 24주로 통일하였다.

제120조(영리낙태, 부동의낙태) ①영리의 목적으로 제11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로 임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태아)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시술을 하는 점에서 더 비난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일반인보다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의사 등의 낙태를 더 무겁게 처벌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 현행형법 제270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낙태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두었다. 낙태의 허용한계에서는 의사의

시술을 요건으로 하므로 오히려 의사로부터 낙태를 받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의사에 의한 낙태 자체를 책임가중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형법학계에서도 업무상낙태를 책임가중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법무부 1992년 개정안도 업무상낙태죄를 폐지하고 영리낙태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신설하였다. 제2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규정인 자격정지병과규정을 삭제하였다.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현행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현행형법 제271조 제2항(존속유기),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 제2항(존속학대), 제275조 제2항(존속에 대한 유기등 치사상)을 삭제하였다.

> 제121조(유기)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7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존속유기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존속에 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규정을 삭제하고 유기죄의 범위내에서 법관이 양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제122조(중유기) 제12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유기에 관한 조문으로 현행형법 제27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조문으로 하였다.

> 제123조(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7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존속학대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같은 조 제2

항)은 삭제하였다.

> 제12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아동의 복지라는 독자적 법익을 갖는 아동혹사죄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과 비교하면 중한 유형으로 형법에 존속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는 형법상 아동혹사죄는 불우아동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삭제하였다.

> 제125조(유기등 치사상) 제121조 내지 제124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이며, 존속에 대한 유기등 치사상의 가중규정(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였다.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

현행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현행형법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 제2항(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81조 제2항(존속체포·감금치사상), 제279조(상습범) 그리고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를 삭제하고, 특수체포·감금죄에 합동범을 추가하였다.

> 제126조(체포,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76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존속체포·감금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 제127조(중체포, 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존속중체포·감금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중체포·감금죄 자체를 폐지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현행 일본형법은 우리나라 형법 제276조에 해당하는 규정만 있다. 일본은 1974년 改正刑法草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존속체포·감금죄를 삭제하면서 체포·감금죄의 가중유형으로서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학대를 한 경우에 가중체포·감금죄로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는데, 체포·감금죄와 폭행죄 등의 경합범으로 처리하면 족하고 특별한 범죄유형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일부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체포·감금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중체포·감금죄와 유사한 다른 범죄, 예컨대 중상해죄(제258조), 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 중손괴죄(제368조)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체포·감금죄는 결합범의 형태로 가혹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가혹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어 체포·감금 후 폭행·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고문을 가하거나 추행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가혹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체포·감금된 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으면 이를 별도로 처벌하면 되므로, 체포·감금된 자에 대한 가혹한 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형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논의과정에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면서도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예컨대 옷을 벗겨 둔 채로 두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마땅히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12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①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26조 또는 제12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26조 또는 제127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체포·감금죄 또는 중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시안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합동범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표현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로 수정하였다. 현재 흉기와 위험한 물건은 개념상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모두 행위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실제 사례에서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흉기를 위험한 물건의 예시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휴대하여'라는 표현으로 인해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크기가 큰 동산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로 수정함으로써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만 한 경우를 특수범죄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바위, 벽과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을 이용하여 특수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9조(미수범) 제126조 내지 제128조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체포·감금죄(제126조), 중체포·감금죄(제127조) 및 특수체포·감금죄(제128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현행형법 제280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제130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126조 내지 제129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8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체포·감금죄(제126조), 중체포·감금죄(제127조) 및 특수체포·감금죄(제128조) 그리고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항은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수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처럼 기본범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결과적 가중범 규정 앞에 둔 예로는 강간치상죄(현행형법 제301조)와 강간치사죄(제301조의 2)가 있다. 그러나 강도치사상죄(제337조, 제338조),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3, 제324조의4) 대부분의 경우 미수범처벌규정은 결과적 가중범 규정의 뒤에 있다.

입법기술상 최근 주장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부여

하기 위해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제130조의 다음에 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듯 한 규정들은 그러한 경우를 미수로서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입법과정상 과오에 지나지 않고, 결과적 가중범은 그 본질상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하므로 현행형법과 같이 체포·감금치사상죄는 기본범죄가 기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수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여, 위와 같은 조항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범죄유형(예컨대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인·치사죄)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최근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고의적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게 위해 체포·감금상해죄, 체포·감금살인죄를 결과적 가중범인 체포·감금치상죄 그리고 체포·감금치사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상해 또는 살해하는 행위는 인질상해죄(제324조의3) 또는 인질살해죄(제324조의4)로 처벌할 수 있고 결합범의 형태를 신설하여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 제131조(형의 감경) 제126조 내지 제128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체포 또는 감금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 조는 현행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있어서의 형의 감경(제295조의2), 인질범죄에 있어서의 형의 감경(제324조의6)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체포와 감금된 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취·유인죄와 마찬가지로 체포 또는 감금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제7장 협박과 강요의 죄

현행형법 제30장 협박의 죄와 제37장에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강요죄의 경우 협박죄와 같이 일반적인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협박과 강요의 죄'의 장을 만들어 함께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유에 대한 죄인 협박죄를 재산상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의 한 형태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학설에서도 다수견해이다. 현행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제285조(상습범),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를 삭제하고, 특수협박죄와 특수강요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를 편

입하였다.

> 제132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형법 제283조 제1항의 규정이며, 존속협박의 가중규정(같은 조 제2항)은 존속범죄를 폐지하는 원칙에 따라 삭제하였다.

> 제133조(특수협박) ① 2인 이상 합동하여 제13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3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폭처법 제3조를 형법의 특수협박죄에 편입하였다.

> 제13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의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수견해가 있었으나. 다수견해는 의무 있는 일이지만 강요에 의하면 불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불법이 경하기 때문에 처벌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아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제135조(특수강요) ①2인 이상 합동하여 제134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34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폭처법 제3조를 형법의 특수강요죄에 편입하였다.

> 제136조(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37조(인질상해·치상) 제13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38조(인질살해·치사) 제13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39조(미수범) 제132조 내지 제13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다수견해는 협박죄의 미수처벌 규정 존치함이 타당하고 보았다. 삭제하자는 의견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의사의 자유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태화 사이에 미수와 기수의 불법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협박죄의 미수범규정을 삭제하면 미수에 불과한 행위가 협박죄의 기수로 처벌되어 현행 미수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제140조(형의 감경) 제136조 또는 제137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현행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현행형법 제288조 제3항과 제289조 제3항 그리고 제293조(상습범)와 제295조(자격정지의 병과)를 삭제하고, 인신매매죄(제141조 제1항), 성매매목적 약취·유인·매매죄(제141조 제2항), 약취·유인 등 상해·치상죄(제147조) 그리고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죄(제148조)를 추가하였다.

> 제141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87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미성년자'를 '18세미만자'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도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와 혼동될 염려가 있고, 민법상 성년의제제도의 도입으로 미성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었으며, 18세에 이르면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어 성인과 달리 취급하거나 보호자의 감독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또는 공연법의 예에 따라 '18세미만자'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최근 민법개정의 논의가 진척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별법상 연령에 관한 규정은 그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형법이 반드시 그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에 친권자(후견인)의 보호감독권도 포함시키는 이상 그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142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성매매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88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나,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여 제1항의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유인죄에 포함시키고, 성매매 목적 약취·유인·매매죄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은 2005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제226조의2)를 신설하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신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인신매매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포함하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인신매매의 목적을 단순히 '추행, 간음 또는 영리'로 할 경우 예컨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전속계약조차도 인신매매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신매매의 목적을 독일형법과 같이 성적 착취나 노동력착취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본형법과 같이 인신매매의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고, 인신매매의 목적을 단순히 '추행, 간음 또는 영리'로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비단 매매행위 뿐만 아니라 약취·유인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인신매매죄는 사실상 성적 착취 또는 노동력 착취 등에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위원회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형법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제142조 제2항과 같이 성매매목적 약취·유인·매매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처벌의 대상을 인신매매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시안은 약취·유

인에까지 확대하였다.

> 제143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형법 제289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국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부견해는 '피해자의 거주국 영역외'의 의미로 해석하여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나, 통설은 '대한민국 영역 외'를 의미한다고 보아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외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2005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일본국외 이송'을 '소재국외 이송'으로 바꾸고(제226조), 약취·유괴·매매된 자의 소재국외 이송죄(제226조의3)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도 '국외'이라는 문언 자체로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힘들고, 인신매매가 국제적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특히 인신매매가 '외국에서 국내로'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형법과 같이 '국외이송'을 '소재국외 이송'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외'라는 문언으로도 해석상 '외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굳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국가간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 제144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91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폐지론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약탈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다.

> 제145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제141조 또는 제143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44조의 죄의 약취,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결혼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92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현행형법은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와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의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제292조 제1항)와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와 제291조(결혼목적 약취·유인)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제292조 제2항)로 구분하여 전자에 비하여 후자를 경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시안은 제141조(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도 제142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143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의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제144조(결혼목적 약취·유인)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만을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시안은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의 약취·유인·매매죄(제142조 제1항)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그 반면 결혼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46조(약취·유인등 상해·치상) 제141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7조(약취·유인등 살인·치사) 제141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1조(미성년자 약취·유인), 제142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143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그리고 제145조 제1항 또는 제3항(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이송, 수수 또는 은닉된 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안에서도 제안되었는데, 범죄의 주체를 제145조 제1항 또는 제3항(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

는 이송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를 범한 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약취·유인 등 상해·치상죄(제146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는 규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3호에 규정된 행위태양(폭행, 상해, 감금, 유기 또는 가혹행위)은 가중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의 행위태양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약취·유인 등 상해·치상죄(제146조)와 보조를 맞추어 약취·유인 등 살해·치사죄(제147조)를 신설하였다.

> 제148조(미수범) 제141조 내지 제147조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1조 내지 제147조의 죄의 미수범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형법 제294조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인 약취·유인 등 치상죄(제146조)와 약취·유인 등 치사죄(제147조)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인정여부는 학설에 맡기기로 하였다.

> 제149조(예비, 음모) 제141조 내지 제14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예비·음모죄 처벌규정과 보조를 맞추어 조문의 위치를 미수범 규정의 다음으로 변경하였다. 현행형법이 예비·음모의 처벌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제289조)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142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와 제143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의 죄에 대해서도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 제150조(벌금의 병과) 제142조, 제143조, 제145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현행형법 제295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나, 자격정지부분은 삭제하였다.

> 제151조(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자 또는 수수, 은닉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현행형법 제295조의2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현행형법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시안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 또는 수수, 은닉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로 확대하였다.

> 제152조(고소) 제142조제1항, 제145조제3항의 각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144조 및 제145조제4항과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형법 제296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현행형법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결혼목적의 수수·은닉죄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은 단순히 목적에 불과하고,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여 약취·유인 또는 수수·은닉행위를 친고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이 있는 때에는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친고죄로 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9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

현행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현행형법의 명칭인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로 변경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형법은 보호법익에 따라 장의 명칭을 붙이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의 명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형법의 명칭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형법에 포섭할 필요가 있는 바 이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일부 구성요건은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후자의 새로운 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위원회의 논의에서는 우선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쟁점인, 폭행·협박의 기준을 협의의 그것으로 변경할 것인가 여부, 강간·강제추행죄의 객체에 법률상·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것인가 여부, 강간의 개념에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도록 할 것인가 여부,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폭행·협박의 기준에 관해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기준을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최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고 이에 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현행형

법의 조문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강간·강제추행죄의 객체에 관해서 법률상·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정의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문제 역시 학설상의 논란이 있어 해석론에 맡기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강간 내지 간음은 남성성기와 여성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유사성교행위(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2항 참조)를 강간의 개념에 포함시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강간 개념의 확장문제는 신중을 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지 않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동의간음죄의 신설문제도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5조 내지 제14조의2를 부분적인 조문수정을 거쳐 형법에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성폭력특별법상의 가중구성요건들은 대부분 가중처벌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로 수정하였다.

반면에,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죄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 규정은 혼인의 진실성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이 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불과하다는 점, 혼인여부는 여성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여성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이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규정은 여성을 오히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일치된 의견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새로이 신설되는 규정으로는 성적 강요죄(156조)가 있다. 성적 강요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의 간음이나 추행을 수인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 외, 강간등상해·치상죄(제162조)에서 강제추행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를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책임주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였고,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원칙적으로 비친고죄로 전환하면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66조)와 정보통신망등이용음란죄(제167조)만 친고죄로 규정한 점도 특색이다.

> 제153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298조에 상응한 강제추행죄 규정이다. 현행형법은 강간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의 맨 첫 조문으로 배치하고 강제추행죄를 바로 뒤에 배치하고 있으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의 관계에서 강제추행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를 맨 앞의 조문으로 배치하였다.

추행이라는 용어가 성폭력피해자에게 수치스러움 내지 치욕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용언 “성적 행동”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성적 행동”이라는 용어가 어색하고 오히려 추행의 범죄적 성격을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어 추행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는 강제추행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강제추행의 불법이 상당히 경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외, “추행을 한”이라는 현행형법 제298조의 문구를 “추행한”으로 수정하였다.

제154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 규정으로 “부녀”를 “사람”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현행형법 제297조와 동일하다. 위원회의 논의에서는 본래 강간의 개념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의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간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신에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제155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한 자는 제153조 및 제154조의 예에 의한다.

현행형법 제299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제153조)로, 준강간은 강간죄(제154조)로 처벌된다. 개정시안이 강제추행죄, 강간죄의 순으로 규정한 것에 상응하여 본조에서 “추행”과 “간음”의 문구 순서를 바꾸었다.

제156조(성적 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제3자의 추행을 수인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제3자의 간음을 수인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된 규정이다. 강제추행죄와 강간죄는 행위자가 스스로 추행이나 간음행위를 한 경우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제3자의 추행이나 간음을 수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한 조문이다. 폭행·협박을 한 행위자와 추행 또는 간음행위를 한 제3자가 공동정범관계에 있다면 강제추행죄 내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수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단순강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행위자가 추행이나 간음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와 강간죄에 비하여 법정형을 다소 낮게 설정하였다.

제157조(특수강간등) ①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53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1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제1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이 규정은 1990년 특가법에 처음 신설된 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성폭력특별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형법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조문에 규정된 “흉기휴대”와 “2인 이상 합동”은 형법에서 불법가중사유로 비교적 일반화된 규정이라는 점,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도 특수강간등의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던 점,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에서도 이를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수강간등의 죄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두가지 작지 않은 수정이 있었다. 첫째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로 수정하였다. 이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에서 흉기휴대를 흉기이용으로 수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는 법정형의 하향조정이 있었다. 특수강간죄 및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에 포함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시안에서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의 법정형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특수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3년 이상의 징역”은 단순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가중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으로 낮추었다.

제15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제1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제15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제1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특별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처벌규정을 형법에 편입한 조문이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신고가 매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중처벌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논의에서는 이 규정을 "긴밀한 신뢰관계의 파괴 내지 권력적 착취의 성격을 지닌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문으로 재구성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자 외에도 "교육, 업무, 고용, 종교 등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폭행·협박으로 강간·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확대개편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그렇게 규정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가 불명확해지고 가중처벌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이 규정에서도 특수강간등의 죄(제57조)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가중처벌되는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였다. 그 근거로는 실제 이모부나 고모부에 의한 성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보다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이모부나 고모부가 피해자의 사실상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제159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53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의한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해 법정형을 하향조정하여 형법에 편입한 조문이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 한다) 제7조는 19세(연나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형법편입여부와 관련하여 양 규정을 통합하여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규정을 두는 방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 가능하지만, 형법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동의능력 없음)로 간주하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성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일반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 지나친 형가중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 일응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에, 19세미만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은 그에 상응할 정도의 합리적인 가중처벌사유가 없다고 보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 반영하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가중처벌규정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13세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5항)와 19세(연나이) 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의 처벌규정은 그 취지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제161조)의 조문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관계에서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 포섭하는 현행 규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와 동일하게 유사성교행위를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강간행위보다는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도구를 이용한 삽입행위 등 소위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유사성교행위도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권에 미치는 침해효과가 결코 강간죄보다 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는 형법에 편입하더라도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양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양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3세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추었으며, 그에 연동하여 13세미만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 제160조(강도강간등) ①제186조제1항[주거침입], 제192조[주거침입절도], 제193조[특수절도] 또는 제202조(미수범. 다만, 제192조 및 제193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제153조(제155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4조(제155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강도가 제153조(제155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가 제154조(제155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5조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한 조문이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의 개정이 있었다.

첫째, 성폭력특별법 제5조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어 강제추행의 경우 아무리 결합범으로 인한 형가중을 인정하더라도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를 보면,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불법의 정도가 강간보다 낮다고 볼 수 있고 또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은 매우 경미한 수준에서부터 상당히 중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1항처럼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지 않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은 강제추행의 경우에 지나치게 가혹한 양형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조의 규정에서는 결합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되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5조와 형법 제339조에 의하면 강도가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가 적용되고 특수강도가 강간이나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강도가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결합범 가중규정이 없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뿐이어서 강도강제추행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2항의 경우 지나치게 형가중에 치중한 나머지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한 것은 죄형균형의 원칙을 일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조 제2항에서는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현행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를 여기에 규정하면서 강도강제추행죄의 결합범구성요건을 신설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61조(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등)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15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153조 또는 제154조의 예에 의한다.
③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153조 또는 제154조의 예에 의한다.

13세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제5

항, 19세(연나이)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를 규정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규정취지를 형법에 반영하고자 한 조문이다. 그럼으로써 현행형법 제302조는 이 조문으로 대체된다.

우선 13세미만자 내지 19세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동 객체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3세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동 객체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제15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세미만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단순 강제추행죄 내지 강간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현행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감경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입법방향이기는 하지만, 이 규정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강간·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있어서 최협의설 해석에서 연유하는 협소함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성폭력특별법 제8조는 "항거불능"이라는 요건 때문에 사실상 현행형법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중복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해서도 강간죄 내지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 제162조(강간등 상해·치상) ①제153조(제153조의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제156조제2항, 제157조제1항(제1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8조제1항(제158조 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9조제1항(제159조 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0조제1항 제1문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제154조, 제157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으로 인한 상해와 치상죄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형법 제301조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강간과 강제추행의 불법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간상해·치상죄와 강제추행상해·치상죄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차등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상해·치상죄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책임주의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63조(강간등 살인·치사) ①제153조 내지 제1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53조 내지 제1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으로 인한 살인죄와 치사죄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형법 제301조의2 및 성폭력특별법 제10조를 통합한 것이다. 법정형은 현행형법 제301조의2와 동일하다. 위원회의 논의에서는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다만, 법정형의 조정은 모든 각칙구성요건에 대해 통일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은 사형을 포함한 현행형법의 법정형을 그대로 제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2008.6.13. 개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 사형폐지가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점 외에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형을 규정한 것은 죄형균형을 일탈한 것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164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등) ①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음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특별법 제11조를 통합한 규정이다. 현행형법 제303조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구금부녀간음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와 피구금부녀추행죄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새로이 신설된 바 있다. 이 규정들을 통합하여,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제1항에, 피구금부녀간음·추행죄는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간음과 등에 의경우를 각각 간음과 등에 의경우달리 규정하였다. 다만, 현행 규정의 법정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낮다는 의견에 따라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다.

구성요건의 문구에서는 현행형법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기타 관계"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에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규정하였다.

성폭력특별법 제11조 제3항은 장애인 보호·감독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강간죄·강제추행죄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161조 제3항에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은 독자적인 의미가 없어 폐지하도록 하였다.

> 제165조(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153조, 제154조, 제162조 내지 제163조의 예에 의한다.

현행형법 제305조에 상응하여 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는 '13세'를 '14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연령기준을 반드시 형사책임연령과 일치시켜야 할 논리적인 필연성은 없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성적 발전이 과거보다 훨씬 조숙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14세'로 연령기준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13세'의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현행형법과 동일하게 13세의 연령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문표제에서 '미성년자'라는 표현 대신에 '13세미만자'라고 보다 분명히 규정하였다.

> 제166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13조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하는 규정이다.

> 제167조(정보통신망등 이용음란) 정보통신망·우편·전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을 수정하여 형법에 편입한 조문이다. 이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관적 목적요소를

삭제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불법의 중점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구성요건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행위수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우편, 전화 기타 방법”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법정형에서는 유사한 처벌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징역형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는 대신에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

> 제168조(카메라등 이용촬영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만 반영하였으며, 법정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다소 낮추는 대신에 벌금형을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 제2항의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은 불필요한 가중처벌규정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형법에 반영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 제169조(미수범) 제153조 내지 제161조, 제162조(단,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3조제1항 및 제16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처벌규정으로 현행 형법 제300조 및 성폭력특별법 제12조의 미수범처벌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등치상죄(제162조)와 강간등치사죄(제163조 제2항)에 대해서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제170조(고소) 제166조와 제16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66조)와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제167조)를 제외하고는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모든 범죄구성요건을 비친고죄로 하였다.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중대한 법익침해행위로 국가형벌권을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친고죄로 규정할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호에 불이익이 초래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용기를 내 형사고

소를 한 피해자의 경우에 피의자측으로부터 고소취소의 압박과 종용에 시달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강요와 같은 이차적 범죄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제166조와 제167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개정안 조문비교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24장 살인의 죄	**제1장 살인의 죄**	**제1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1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죄 삭제)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5조(영아살해)** 생모가 치욕을 감추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갓난아이를 살해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6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117조(위계촉탁살인등)** 제116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114조의 예에 의한다.	**제10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102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101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8조(미수범)** 제114조 내지 제1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4조(미수범)** 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9조(예비·음모)** 제114조 또는 제11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예비·음모)** 제101조 또는 제10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 삭제)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 삭제)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항 삭제, 제122조로 이동)	**제106조(상해)**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 존속상해죄 삭제) (③항 삭제, 아래 제108조로 이동)
(해당규정 없음)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21조(특수상해)** ①2인이상 합동하여 제12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2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특수상해)** ①2인 이상 합동하여 제10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06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57조 제3항)	**제122조(미수범)** 제120조 및 제12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8조(미수범)** 제106조 및 제10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3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기타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	**제109조(중상해)** ①사람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기타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항 존속중상해죄 삭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4조(상해치사)** ①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0조(상해치사)**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항 존속상해치사죄 삭제)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5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을 폭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1조(폭행)** ①사람을 폭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항, 존속폭행죄 삭제)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6조(특수폭행)** ①2인이상 합동하여 제125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특수폭행)** ①2인 이상 합동하여 제111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11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127조(폭행치사상)**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 및 제124조의 예에 의한다.	**제113조(폭행치사상)** 제111조 또는 제11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및 제110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	**제128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	(동시범의 특례규정 삭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범 규정 삭제)	(상습범 규정 삭제)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 삭제)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 삭제)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9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4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해당규정 없음)	**제117조(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장 낙태의 죄	**제4장 낙태의 죄**	**제4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3조(낙태)** ①임신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임신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8조(낙태)** ①임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임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5조(낙태의 허용범위)** ①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신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3. 제166조 내지 제170조, 제172조 내지 제175조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낙태는 임신한 날부터 24주내에, 제1항 제3호 또는 제1항 제4호의 낙태는 임신한 날부터 20주내에 하여야 한다.	**제119조(낙태의 허용범위)** ①의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3. 제153조 내지 제162조, 제164조 및 제165조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②제1항의 낙태는 임신한 날부터 24주내에 하여야 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134조(영리낙태, 부동의낙태)** ①영리의 목적으로 제13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임신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항 자격정지 병과규정 삭제)	**제120조(영리낙태, 부동의낙태)** ①영리의 목적으로 제11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로 임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항 자격정지 병과규정 삭제)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6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1조(유기)**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 존속유기죄 삭제) **제122조(중유기)** 제12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항 존속중유기죄 삭제)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영아유기죄 삭제)	(영아유기죄 삭제)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3조(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 존속학대죄 삭제〉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	〈아동혹사죄 삭제〉	**제12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8조(유기등 치사상)** ①제136조 또는 제13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36조 또는 제137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5조(유기등 치사상)** 제121조 내지 제124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항 존속유기등치사상죄 삭제)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6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2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6조(체포,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 존속체포·감금 삭제)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4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7조(중체포, 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항 존속중체포·중감금죄 삭제)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제143조(특수체포, 특수감금)** ①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제14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①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26조 또는 제12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1까지 가중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4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26조 또는 제127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상습범 규정 삭제)	(상습범 규정 삭제)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5조(미수범)** 제142조 내지 제14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9조(미수범)** 제126조 내지 제12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142조 내지 제14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42조 내지 제145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0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126조 내지 제128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항 존속체포·감금등치사상죄 삭제)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 삭제)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 삭제)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131조(형의 감경)** 제126조 내지 제128조 미치 제13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체포 또는 감금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0장 협박의 죄	**제6장 협박의 죄**	**제7장 협박과 강요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	**제139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	**제132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항 존속협박죄 삭제)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특수협박)** ①2인이상 합동하여 제139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특수협박)** ①2인 이상 합동하여 제13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3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폭처법 ①6년 이하 ②1년 이상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범 규정 삭제)	(상습범 규정 삭제)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1조(미수범)** 제139조 및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아래 제139조로 이동)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9조(강요, 존속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삭제)
(해당규정 없음)	**제160조(특수강요)** ①2인이상 합동하여 제15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5조(특수강요)** ①2인 이상 합동하여 제134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34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인질강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6조(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인질상해·치사)** 제161조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7조(인질상해·치상)** 제13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인질살해·치사)** 제161조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8조(인질살해·치사)** 제13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 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미수범)** 제159조 내지 제16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9조(미수범)** 제132조 내지 제13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65조(형의 감경)** 제161조 또는 제162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40조(형의 감경)** 제136조 또는 제137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18세미만자의 약취, 유인)** 18세미만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1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8조(영리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매음 기타 추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자를 매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항 상습범 규정 삭제)	**제142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성매매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항 상습범 규정 삭제)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항 상습범 규정 삭제)	**제143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항 상습범 규정 삭제)
제290조(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로 이동)	(제149조로 이동)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0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제151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제147조 또는 제149조의 약취, 유인이나	**제145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제142조 또는 제143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50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결혼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44조의 죄의 약취,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결혼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규정 없음)	**제152조(약취·유인등 상해·치상)** 제147조 내지 제14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6조(약취·유인등 상해·치상)** 제141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규정 없음)	**제153조(약취·유인등 살인·치사)** 제147조 내지 제14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7조(약취·유인등 살인·치사)** 제141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습범 규정 삭제)	(상습범 규정 삭제)
제294조(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4조(미수범)** 제147조 내지 제1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8조(미수범)** 제141조 내지 제147조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5조(예비, 음모) 147조 내지 제149조의 죄를	**제149조(예비, 음모)** 제141조 내지 제143조의 죄를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56조(벌금의 병과)**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의 죄 및 그 미수범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은 삭제)	**제150조(벌금의 병과)** 제142조, 제143조, 제145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은 삭제)
제295조의2(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57조(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자 또는 수수, 은닉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51조(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자 또는 수수, 은닉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고소) 제288조 제1항, 제292조 제1항 또는 제293조 제2항의 각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8조(고소)** 제148조 제1항 및 제151조 제3항의 각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150조의 죄, 제151조 제4항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2조(고소)** 제142조제1항, 제145조제3항의 각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144조, 제145조제4항과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0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6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여자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4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6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정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한 자는 제153조 및 제154조의 예에 의한다.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156조(성적 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에게 제3자의 추행을 수인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제3자의 간음을 수인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168조(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 합동하여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16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7조(특수강간등)** ①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53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1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제1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해당규정 없음)	**제15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제1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제154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제1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13세미만의 미성년자	(해당규정 없음)	**제159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①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53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생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은 반영하지 않고 삭제함)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성폭력특별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규정 없음)	**제160조(강도강간등)** ①제186조제1항[주거침입], 제192조[주거침입절도], 제193조[특수절도] 또는 제202조(미수범. 다만, 제192조 및 제193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제153조(제155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4조(제155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강도가 제153조(제155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가 제154조(제155조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	**제173조(18세미만자등 간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또는 정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등)**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15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153조 또는 제154조의 예에 의한다. ③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153조 또는 제154조의 예에 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강간등 상해·치상)** 제166조 내지 제16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강간등 상해·치상)** ①제153조(제153조의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56조제2항, 제157조제1항(제157조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8조제1항(제158조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9조제1항(제159조제1항의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0조제1항제1문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54조, 제157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1조(강간등 살인·치사)** 제166조 내지 제16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강간등 살인·치사)** ①제153조 내지 제1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53조 내지 제1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성폭력특별법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제174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여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여자를 감호하는 자가 그 여자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4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등)** ①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음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삭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175조(14세미만자간음·추행)** 14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제166조 내지 제168조, 제170조 내지 제172조의 예에 의한다.	**제165조(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153조, 제154조, 제162조 내지 제163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규정 없음)	**제166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규정 없음)	**제167조(정보통신망등 이용음란)** 정보통신망·우편·전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규정 없음)	**제168조(카메라등 이용촬영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규정)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 제12조(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2조(미수범)** 제166조 내지 제17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9조(미수범)** 제153조 내지 제161조, 제162조(단,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3조 제1항 및 제16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15조(고소)** 제11조 제1항·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6조(고소)** 제166조, 제167조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 제166조·제167조의 예에 의하는 제169조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 제173조, 제174조의 죄, 제166조·제167조의 예에 의하는 제175조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고소)** 제166조와 제16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주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분야 개정방안

□ 발표자: 서보학 교수(경희대)

□ 참여자: 김재봉 교수(한양대)
문채규 교수(부산대)
이정원 교수(영남대)
이천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자: 하태영 교수(동아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 분야 개정방안

서보학, 김재봉, 문채규, 이정원, 이천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 부분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등의 개정이 검토되었다. 많은 입법론적 쟁점들이 검토되었으나 이 부분의 현행 형법규정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섣부른 개정이 학설상의 활발한 논의를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개정에 이른 규정들은 많지 않다. 이하 주요 조문순서대로 논의쟁점 및 개정사항을 소개하기로 한다.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제171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형벌론 및 죄수론 개정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맞추어 제2항에서 자격정지형을 삭제하였다.

공연성의 요건 삭제 또는 표현의 수정 여부

우리 형법상 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입법례에서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거나(스위스 형법, 오스트리아 형법) 공연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독일 형법, 프랑

스 형법)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형법에 규정된 '공연히'라는 표현은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이' '空然히' 또는 '괜히' 등의 뜻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공연성(公然性)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로 그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첫째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둘째 공연성(公然性)의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수정('공연히' →'공공연하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다.

검토결과 현행 형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첫째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요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시하는 중대한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의 명예보호를 이유로 표현·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계속 필요하다는 것, 둘째 현재 법문의 '공연히'를 '공공연하게'라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공연음란죄에서와 같은 다른 조문에서의 '공연'이라는 표현의 필요성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명예의 주체인 '사람'을 '타인'으로 수정하는 방안

현행 형법 제307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향유주체가 된다. 그런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자연인 외에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론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명예의 주체에 자연인 외에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포괄될 수 있도록 '사람'을 '타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명예의 주체와 관련하여 일본 형법 및 프랑스 언론법·형법은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독일 형법과 스위스 형법 및 오스트리아 형법은 '타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검토결과 현행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사람'속에 당연히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다수설은 명예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소수설도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307조)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마치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명예에 관한 죄를 침해범으로 해석할 여지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법조문의 표현을 수정("...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자는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검토결과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법문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첫째 현행 법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고, 둘째 명예훼손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는데 법문이 이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할 경우 자유로운 학설논쟁을 입법론적으로 봉쇄하게 된다는 것 등이었다.

> 제173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이나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7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17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09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제1항에서 출판물등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이나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 및 정보통신망" 등으로 확대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역시 자격정지형을 삭제하였다.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기타 출판물'의 범위 확장

현행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기타 출판물'의 개념에 'TV, 영화, PC통신, 인터넷'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1953년에 제정되어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 형법 제309조가 변화된 시대상을 담고 있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1] 최근에는 기존의 인쇄출판물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형법규범의 일반예방효과를 높이고 특별형법의 정비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형법전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제309조 '기타 출판물'의 개념에 TV등 방송매체와 인터넷등의 정보통신매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유추해석금지의 관점에서 불가하다는 부정설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309조에 방송매체 및 정보통신매체를 명문화한 개정

1) 1995년 형법개정시 제309조는 벌금형의 현실화만 이루어졌다.

안을 마련하였다.

> 제174조(위법성의 조각) 제171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현행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공익성’의 요건 완화 여부

현행 법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100%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한다면 동조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사회현실과도 동떨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판례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고 하여 공익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형법개정연구회는 이러한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여 ‘오로지’라는 문구를 ‘주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도 ‘주로’라는 의미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진실성’의 요건 완화 여부

현행 제310조에서 진실성의 요건을 입법론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비록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신중하게 사실을 조사했음에도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탈락한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고(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형법 등 외국의 입법례도 역시 비슷한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는바, 현행 규정으로도 동일한 해석을 하여 진실로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구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제175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또는 ‘사이버모욕행위’의 추가 여부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악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특별법에 가중구성요건인 사이버모욕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차제에 입법론적으로 특별법에 가중구성요건으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현행 형법의 모욕죄 규정에 사이버모욕행위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법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거나 형법에 ‘사이버모욕행위’를 추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이러한 주장의 진의는 형법상 모욕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서 처벌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차제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면서 이를 반의사불벌죄 내지 비친고죄화하여 국가에 의한 형사제재를 자유롭게 하자는데 있다. 둘째,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 규정으로도 사이버상에서의 모욕행위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을 이유가 없다. 예컨대 대법원도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6도4934). 셋째, 현실세계에서의 모욕행위보다 사이버상에서의 모욕행위가 더 불법성이 크다고 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가 명예훼손죄보다 경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그 불법의 정도가 약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데 단지 사이버상에서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가중사유로 할 이유가 없다. 넷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가중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행위수단에 따른 별도의 가중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12장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181조(대화·통신비밀침해) ①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전자장치 또는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알아내거나 또는 채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알게 된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사용·제공·공개 또는 유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시안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대화 · 통신비밀침해죄의 신설

현행 형법은 대화·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과 개별 행정형법규정에 처벌규정이 있다. 대화나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몇몇 도청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일반국민들도 대화나 통신비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인 형법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수의 입법례가 비밀녹음이나 도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고(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학설 중에서도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하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대화나 통신의 비밀은 중요한 사생활의 영역이고 일반 국민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에 그 규율을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형법개정연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규정 중 중요한 행위는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통신비밀법은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 다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형법에 편입이 고려될 수 있는 행위유형으로는 대화의 녹음이나 감청, 전기통신의 감청 등이고 이를 신설된 제181조에 규정하였다.

무단촬영 · 관찰죄의 신설 여부

타인의 사적 영역을 무단으로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도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현재 형법이나 특별법 모두 이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에 신체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화나 통신의 비밀침해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처벌규정을 두면서, 이에 못지않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단촬영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기본법인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례로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무단촬영을 처벌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관찰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사생활을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

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형법의 보충성과 과잉형벌금지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형법개정연구회의 검토과정에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부정설이 다수의견이어서 개정시안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영업비밀침해죄의 신설 여부

기업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현재는 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으로 표시)에서 규율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와 중국이 있고,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은 특별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형법개정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영업비밀침해를 형법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스파이 등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국한된 것이고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입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형법보다는 특별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도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 특허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은 특허법 등 특별법에 두면서 영업비밀침해만을 형법에 두는 것은 어색하다. 무엇보다도 형법에 도입할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영업비밀침해에서 다른 법보다 양벌규정의 범죄억지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형법에 양벌규정의 도입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다수라고 할 수도 없다.

> 제182조(정보통신망의 비밀침해등) ①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사용·제공·공개 또는 유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시안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정보통신망의 비밀침해죄 신설 여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관리되는 정보도 중요한 사생활 영역이 된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에는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표기한다)에 다수 존재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형법에 전산정보 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과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적 전산정보에 대한 침해의 불법성은 일반시민에게 상당히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억지를 위하여 중요한 행위유형은 형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보통신망법 제72조와 제49조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형법에 편입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시안에 신설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단순한 해킹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제72조, 제48조), 이 규정도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해킹은 업무방해나 비밀침해의 예비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잉형벌의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당연히 형법에 편입 여부도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제183조(업무상비밀누설) ①법령에 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는 자, 의료업무, 법률업무, 회계업무 기타 의뢰자와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무상의 보조자 또는 그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17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를 확대규정하였다.

업무상비밀누설죄 주체의 확대

현행 형법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의사, 한의사 등 일정한 직무종사자를 개별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도 세무사, 상담원, 홍신업무 종사자 등 직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직무는 무수히 많고, 따라서 개별적 열거방식은 변동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처벌의 흠결을 발생시키게

된다. 여기서 기존의 형법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주체보다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보장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해야하는 직종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개별적 열거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처벌의 흠결과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법익보호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주체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의료업무, 법률업무, 회계업무 기타 의뢰자와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무상의 보조자 또는 그러한 직에 있던 자'를 주체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법률에 의하여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자'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 두 견해 모두 포괄적 규정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여전히 처벌흠결의 여지는 남아있게 된다. 전자의 경우 의뢰자의 신뢰관계가 없는 경우 흠결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 흠결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형법개정연구회는 앞의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법령에 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 의뢰자와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무상의 보조자 또는 그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13장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제187조(특수주거침입) ①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시안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특수주거침입죄에 폭처법규정의 편입 여부

형법개정연구회는 형법상의 특수주거침입죄에 폭처법상의 특수주거침입죄 규정을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형법의 특수주거침입죄를 둘로 나누어 제1항에 합동주거침입죄, 제2항에 단체·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에 의한 주거침입죄를 규정하였다.

> 제189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행 형법 제322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퇴거불응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삭제 여부

형법은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퇴거불응죄에서 미수범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는 견해가 다수설이기는 하지만 형법개정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삭제를 주장하는 견해의 주된 논거는 퇴거불응죄와 같은 진정부작위범에서 미수범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진정부작위범이라도 거동범의 성격을 갖는 것만이 아니고 결과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미수범의 성립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3)] 또한 미수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학설상의 견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학설의 발전을 봉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퇴거불응죄의 장애미수의 성립가능성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불능미수는 가능할 것이다.

> 제188조(주거·신체수색) 사람의 신체, 소지품,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실질설에 의하면 양자는 거동범과 결과범의 구별이 될 것이나 다수설인 형식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이나 부진정부작위범 각각에 거동범과 결과범이 포함될 수 있다.

3) 진정부작위범을 진정無爲犯[폭력단체 불고지죄(독일형법),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과 부진정無爲犯[일반범죄 불고지죄(독일형법 제138조),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 퇴거불응죄(319조 2항)]으로 구별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미수의 성립이 부정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미수범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문채규, 부작위범 미수의 가능성, 안동대 사회과학 논총 7, 1995.12, 1119면 이하).

현행 형법 제321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소지품을 객체로 추가하였다.

신체수색죄와 주거수색죄의 분리 여부 및 소지품을 객체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주거수색죄와 별도로 신체수색죄를 규정하면서 신체 이외에 소지품을 객체로 추가하였다. 신체 자체를 수색하는 것은 주거수색죄와 성질을 달리하고 신체와 소지품도 구별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형법개정연구회는 주거와 신체 모두 사생활의 영역의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별도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신체수색죄의 객체에 소지품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지품 수색도 신체 수색 못지않게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신체라는 문언에 당연히 소지품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 제190조(피해자의 의사) 제186조, 제188조 및 그 죄의 미수범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시안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주거침입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할 것인지 여부

주거침입죄의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할 것인지가 검토되었다. 입법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친고죄로 하고 있다.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각건대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의 전단계로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로서 불법의 정도가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한 주거침입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형법개정연구회의 검토과정에서는 친고죄 보다는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견해가 다수의견이었다.

제14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 및 강도의 죄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제191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불법영득의사는 명시하지 않음

불법영득의사는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이미 절도죄와 강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확립된 상태이므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제192조(주거침입절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야간'의 요건을 삭제하였다.

'야간' 요건의 삭제

주거침입과 결합된 절도죄 및 강도죄의 가중구성요건에서 '야간'의 요건을 삭제하여 주·야간의 구별을 없애기로 하였다. 주거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야간을 주간과 달리 특별취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런 점이 반영되어 주거침입죄를 포함하여 폭처법상 가중처벌규정(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중 '야간'이라는 가중의 요건이 폐지된 점도 고려하였다. '야간'의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흉기휴대 내지 합동절도와 주거침입이 결합할 경우 주·야간 간에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주거침입절도죄에서 주거 등의 범위의 조정

1995년 형법개정 전에는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각 주거

등의 범위가 타당하게도 통일되어 있었는데, 1995년 형법개정 시에 주거침입죄의 주거 등의 범위를 조정하면서 이를 야간주거침입강도죄에서는 반영시켰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개정 전의 주거 등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이를 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강도죄의 법문과 통일시켰다.

> 제193조(특수절도) ①문이나 담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192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 제197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제195조 및 제196조의 예에 의한다.

현행 형법 제331조 및 제335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일부 언어의 순화 및 보완 그리고 어순의 조정이 있었다.

법률언어의 순화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에서 “문호 또는 장벽”을 “문이나 담”으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서 “면탈하거나”를 “면하거나”로, “죄적을”을 “증거를”로 개정하여 법률언어의 순화를 기하였다.

> 제196조(특수강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195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95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 형법 제334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흉기휴대절도죄 및 흉기휴대강도죄의 ‘흉기’ 및 ‘휴대’ 개념의 개정

“흉기를 휴대하여”라는 가중적 범행수단을 각칙 규정 전반에 걸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로 개정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서 절도 및 강도죄 부분에서도 통일적으로 개

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에는 “이용”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의 “휴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합동절도 및 합동강도는 현행대로 유지

단순한 2인 이상의 합동이라는 사유를 특별한 가중사유로서 특수절도·강도죄의 다른 가중사유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의하였으나(즉 가중구성요건으로 합동절도 및 합동강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의 다른 범죄유형에서(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등) 합동을 가중사유로 신설하기로 한 취지에 맞춰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제199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의 통일적 조정

예외적으로 법정형의 조정이 있었다. 즉 강도죄와 강간죄, 강도살인죄와 강간살인죄, 그리고 강도치사죄와 강간치사죄의 법정형이 각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정하여 강간상해·치상죄와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더불어 특수강도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형을 폐지함으로써 특수강도의 법정형과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의 차별화를 유지시켰다.

한편, 강도강간죄(현행 형법 제339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으로 이동 배치시켰다.

> 제201조(해상강도) ②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40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행위주체를 ‘해상강도’로 수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해상강도에 의한 강간죄를 삭제하였다.

해상강도치사상죄 등의 주체에 해상강도의 미수범을 포함시킴

성폭법 제9조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현행법상의 규정으로써는 해상강도의 미수범을 해상강도살인상해죄나 해상강도치사상죄의 주체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실무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런데 다른 결합범적 가중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유독 해상강도와 관련한 가중범에 대해서만 기본범죄의 미수범을 그 주체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석상 해상강도의 미수범이 주체로 포함될 여지가 있도록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를 "해상강도가"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해상강도강간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의 폐지

해상강도죄와 그 가중범죄를 별도로 존치시킬 실효성이 크지 않고, 또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에서 전체를 폐지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다만 형법 제340조 제3항 후단의 해상강도강간죄만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제15장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 및 공갈의 죄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제206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 형법의 제347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사기죄의 특별히 중한 경우와 경미한 경우의 구별 여부

독일 형법의 사기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를 특별히 중한 경우와 경미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다른 재산범죄들을 그대로 두고 사기죄만을

중한 경우와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여 현행과 같은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명시 여부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재산침해로 완성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구성요건적 결과로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해석에 맡기고 현행의 규정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형법개정연구회의 결론은 컴퓨터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사기죄의 규정 여부

독일 형법의 경우와 같이 사기죄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특히 보조금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남용), 신용카드사기(남용) 등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에서는 학설과 판례의 다양한 해석에 맡기기로 하여 현행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제207조(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의 제347조의2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컴퓨터사기프로그램의 제작행위의 처벌 여부

대량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는 아직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기수)이나 또는 컴퓨터사기 행위의 시작(미수) 전이라도 그러한 컴퓨터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대해서도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일반 재산범죄의 예비행위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규정을 시설하지 않았다.

제208조(준사기) ①18세미만자의 지적능력부족 또는 사람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 형법 제348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일부 표현의 수정이 있었다.

준사기죄의 폐지 여부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일반사기죄로, 기망 없이 정상적 거래에서 현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죄로, 현저한 부당이득이 아닌 경우라면 민사법상의 취소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본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망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유형이 존재가능하고 반드시 현저한 부당이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다만 同구성요건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을 참고로 하여 부분적으로 용어의 순화가 이루어졌다.

제209조(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48조의2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행위태양 보완 및 수정 여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관련해서는 구성요건상의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의견, 편의시설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제3자로 하여금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해석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취지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제210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구차하고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뚜렷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 형법 제349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일부 언어의 순화가 있었다.

부당이득죄의 행위태양 보완 및 표제 수정 여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부당이득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당이득죄'의 표제를 '폭리적 착취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사기와 공갈의 죄에 규정 된 '상습범'의 규정과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은 다른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제16장 횡령과 배임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214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5조(배임)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55조에 해당하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두 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횡령죄와 배임죄를 별개 조문으로 구성

1992년 법무부의 형법개정안에서는 횡령과 배임은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죄명도 다른 2개의 죄를 한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별개의 조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배신설에 따르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분범으로서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서로 성격을 같이 한다. 다만 횡령죄는 재물을 객체로 함에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자를 성격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이외에는 - 독립적인 2개 범죄유형을 하나의 표제로 만들어 규정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개의 조로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배임죄 규정에 신뢰관계의 명시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타인의 사무처리의무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 '사무처리의무위반'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와 통설은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 '배신설'에 입각하여 사무처리의무위반을 신임관계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형법 제335조 제2항은 - 대내적 '신임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독일과는 달리 - 그러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형법의 규정이 반드시 배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 및 이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범위의 문제발생은 우리 형법에서 배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독일형법과 같이 '신임관계(혹은 신뢰관계)'의 요건을 법문에 규정하는 방안은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는 입법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제217조(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사산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배임수재죄의 성립범위의 확대

배임수재죄의 행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그런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同행위 주체 이외의 제3자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임죄(제215조 제2항)의 경우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 제219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60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현재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규정하였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은 그 예시에 불과하다. 즉 매장물도 땅, 바다밑,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물을 제2항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정조항에서는 제1항에 함께 규정하고 기존의 제2항은 삭제하였다.

제17장 장물에 관한 죄

장물에 관한 죄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제222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등)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21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64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죄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제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표제 변경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안에서와 같이, 제222조의 표제를 ‘업무상과실, 중과실’에서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취득등’으로 수정하여 표제의 죄명을 명확히 하였다. 제116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제25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제21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의 표제가 보다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224조(동력) 제205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개정시안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제205조(동력) 준용 규정 신설

장물죄의 행위의 객체는 장물이고, 이 장물은 재물임을 요한다. 이에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현행 형법이 장물죄에 대하여 제34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장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당연히 재물에 해당하고 형법 제346조는 주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 형법 제346조의 준용규정의 유무에 관계 없이 - 당연히 장물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재산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 즉 절도와 강도의 죄(제14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15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16장), 손괴의 죄(제18장)는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 규정’(제205조) 또는 동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05조, 제213조, 제220조, 제231조). 따라서 개정시안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 제224조(동력 준용 규정)를 신설하였다.

제18장 손괴의 죄

손괴의 죄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225(재물손괴 등)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9조(경계침범)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각각 현행 형법 제366조 및 제370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개정시안에서 각 제2항이 신설되었다.

손괴죄·경계침범죄의 반의사불벌죄화

단순손괴죄는 - 기타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인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형법, 일본형법, 스위스형법이 단순손괴죄에 대하여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상으로도 단순손괴죄는 법정형이 가장 가벼운 범죄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개정연구회는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안은 주거침입죄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 경계침범죄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

> 제23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① 제204조의 규정은 제225조와 제229조의 죄 및 그 미수범에 준용한다.

역시 개정시안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준용규정 신설

손괴죄는 폭력범죄의 성격을 가진 범죄이므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와 경계침범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절도죄에 비하여 현저히 경미한 범죄인 이상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친족상도례 규정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다.

제19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사항을 조문별로 정리·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강요죄와의 별도의 장으로의 분리 및 장의 위치 변경

강요의 죄(제134조~제140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와 그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다. 반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232조~제236조)는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강요죄는 제19장의 죄에 포함시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양자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 기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죄의 마지막인 손괴의 죄 다음에 위치시켰다.

> 제232조(권리행사방해) ①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물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제1항의 재물을 교부받아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 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물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유자를 위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재물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를 한 자도 각 항에 정한 형과 같다.
> ⑤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위태양의 확대

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즉 절도죄, 강도죄, 손괴죄의 경우는 그 행위객체가 '타인의 재물'이고, '자기의 물건'을 절취(취거), 강취, 손괴(또는 은닉)하는 경우에는 각각 권리행사방해죄(제232조), 점유강취죄(제233조), 권리행사방해죄(제232조)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권리행사방해죄(제232조)에서의 '취거'와 '손괴'는 각각 절도죄(제191조)에서의 절취와 손괴죄(제225조)에서의 손괴행위에 대응하는 것이고, 점유강취죄(제233조)에서의 강취는 강도죄(제195조)에서의 강취와 동일한 의미이다.

이처럼 제232조가 행위태양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 '타인의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는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232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어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 설사 이 경우에 - 사기죄(제206조) 및 공갈죄(제211조)가 행위객체를 절도, 강도, 손괴 등과는 달리 단순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 '타인의'라는 수식어를 생략하고 있어 - 사기죄 또는 공갈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강취의 경우가 사기·공갈의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의 행위태양에, 사기죄와 공갈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교부받은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범위에 포함시켰다.

'은닉 또는 손괴'하여 등의 표현 정비

권리행사방해죄(제232조)에서의 '은닉 또는 손괴'행위는 손괴죄(제225조)에서의 손괴행위 즉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 또는 손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으로 수정하여 입법의 통일성을 기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물건'이라는 용어(제232조, 제233조)도 '재물'로 수정하였다.

법정형 차등화

제232조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취거(절취)와 손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자기의 물건을 절취한 때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자기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때보다 무겁게 처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었다.

	취 거	손 괴
타인의 재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9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225조)
자기의 재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2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2조 제3항)

> 제234조(점유강취등 치사상) 제23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26조를 대체하는 규정이다.

점유강취등 치사상죄 신설

현행 형법의 중권리행사방해죄(제326조)는 점유강취·준점유강취(현행 형법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그 형을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점유강취죄는 자기의 재물에 대한 강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도치사상죄(제199조, 제200조)에 대응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에 대한 가중처벌은 상해를 기본범죄로 하는 중상해죄(제109조 제1항)와 유기를 기본범죄로 하는 중유기죄(제122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폭행죄나 협박죄 등의 가중처벌로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형법과 같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아닌, 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234조 점유강취등 치사상)을 마련하였다.

제236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②제205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현행 형법의 제328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제2항은 개정시안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제205조(동력) 준용 규정 신설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다. 물건은 재산죄에 있어서 재물과 같은 의미이다. 이에 본죄에 대하여 제205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본죄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제205조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 형법 제205조의 준용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 당연히 본죄의 물건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개정연구회는 다른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제205조 준용규정(제205조, 제213조, 제220조, 제231조)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본죄의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 제205조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 조문비교표>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명예에 관한 죄**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명예훼손) ①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명예훼손) ①현행 형법과 동일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7조(사자명예훼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사자의 명예훼손) 현행 형법과 동일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8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하여 제18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186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이나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7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17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89조(위법성의 조각) 제186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74조(위법성의 조각) 제171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0조(모욕)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6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172조와 제17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71조와 제17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1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2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7조(신용훼손) 현행 형법과 동일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93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78조(업무방해) ①제177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현행 형법과 동일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4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9조(경매, 입찰의 방해) 현행 형법과 동일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12장 비밀침해의 죄**	**제12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제182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제180조(비밀침해) ①현행 형법과 동일 ②현행 형법과 동일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83조(대화비밀침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1조(대화·통신비밀침해) ①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전자장치 또는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알아내거나 또는 채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알게된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사용·제공·공개 또는 유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82조(정보통신망의 비밀침해등) ①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사용·제공·공개 또는 유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84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료업무, 법률업무, 회계업무 기타 의뢰자와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무상의 보조자 또는 그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에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83조(업무상비밀누설) ①법령에 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는 자, 의료업무, 법률업무, 회계업무 기타 의뢰자와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무상의 보조자 또는 그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84조(미수범) 제181조 및 제182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5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5조(고소) 현행 형법과 동일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11장 주거침입의 죄**	**제13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7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86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현행 형법과 동일 ②현행 형법과 동일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8조(특수주거침입)①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7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7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7조(특수주거침입) ①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21조(주거·신체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주거·신체수색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의 신체 또는 소지품을 수색한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88조(주거·신체수색) 사람의 신체, 소지품,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0조(미수범) 제177조 제1항, 제178조 및 제17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9조(미수범) 현행 형법과 동일
	제181조(피해자의 의사) 제177조, 제179조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0조(피해자의 의사) 제186조, 제188조 및 그 죄의 미수범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15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14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5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1조(절도) 현행 형법과 동일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2조(주거침입절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97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 또는 담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196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93조(특수절도) ①문이나 담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192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98조 (자동차등 불법사용) ①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4조(자동차등 불법사용) ①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	폐지	폐지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9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5조(강도) 현행 형법과 동일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0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1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99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96조(특수강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195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195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201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제199조 또는 제200조의 예에 의한다.	제197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제195조 및 제196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2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8조(인질강도) 현행 형법과 동일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3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4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강도살인·치사) 현행 형법과 동일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5조(강도강간) ①강도가 여자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강간과 추행의 죄로 조문 위치 변경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폐지	제201조(해상강도) ①현행 형법과 동일 ②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폐지	폐지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6조(미수범) 제195조 내지 제205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2조(미수범) 제191조 내지 제20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3조(예비, 음모) 현행 형법과 동일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208조(친족간의 범행) ①친족 사이에서 범한 제195조 내지 제198조의 죄 및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 사이에서 범한 제1항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04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191조 내지 제194조의 죄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간의 제191조 내지 제194조의 죄 또는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기할 수 있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폐지	폐지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209조(재물)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재물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205조(동력) 현행 형법과 동일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6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5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0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06조(사기) ①현행 형법과 동일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7조(컴퓨터등 사용사기) 현행 형법과 동일
제348조(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준사기) ①18세미만자의 지적능력부족 또는 사람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08조(준사기) ①18세미만자의 지적능력부족 또는 사람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13조(편의시설부정이용) 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09조(편의시설부정이용) 현행 형법과 동일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4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구차하고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뚜렷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10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구차하고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뚜렷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11조(공갈) ①현행 형법과 동일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폐지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7조(미수범) 제210조 내지 제213조, 제215조와 제21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12(미수범) 제206조 내지 제209조와 제2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폐지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218조(친족간의 범행, 재물) ① 제208조의 규정은 제210조 내지 제215조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에 준용한다 ② 제209조의 규정은 이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213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204조와 제205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17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16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9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4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0조(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5조(배임)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1조(업무상의 횡령·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219조 또는 제22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6조(업무상의 횡령·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214조 또는 제21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2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7조(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폐지	폐지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3조(미수범) 제219조 내지 제22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8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4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9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225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208조와 제209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220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204조와 제205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18장 장물에 관한 죄**	**제17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6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21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현행 형법과 동일 ②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폐지	폐지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제227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등)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26조의 죄를	제222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등)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21조의 죄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28조(친족간의 범행) ①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제2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3조(친족간의 범행) ①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제2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224조(동력) 제205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2장 손괴의 죄	**제19장 손괴의 죄**	**제18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재물손괴 등) ① 타인의 재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5(재물손괴 등) ①타인의 재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건조물파괴)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공익건조물파괴) 현행 형법과 동일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제231조(특수손괴) 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2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특수손괴) 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225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225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제23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제22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2조(건조물파괴등 치사상) 제230조 또는 제23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28조(중손괴) ① 제226조 또는 제22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26조 또는 제22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경계침범) ①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9조(경계침범) ①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4조(미수범) 제229조 내지 제2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0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제235조(친족간의 범행, 재물) ①제208조의 규정은 제229조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 제233조의 죄에 준용한다. ②제209조의 규정은 이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23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① 제204조의 규정은 제225조와 제229조의 죄 및 그 미수범에 준용한다. ②제205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9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제236조(권리행사방해) 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물을 취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권리행사방해) 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물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제1항의 재물을 교부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제1항의 재물을 교부받아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물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소유자를 위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재물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를 한 자도 각 항에 정한 형과 같다. ⑤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있어서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3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을 취거함에 있어서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8조(점유강취등 치사상) 제23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4조(점유강취등 치사상) 제23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제239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제235조(강제집행면탈) 현행 형법과 동일

현행 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 재물) ①제208조의 규정은 제2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에 준용한다. ②제209조의 규정은 이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236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①제204조의 규정은 제232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에 준용한다. ②제205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 3 부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Ⅱ

사회 : 하태훈 교수 (고려대,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제5주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개정방안

□ 발표자: 이경재 교수(충북대)

□ 참여자: 원혜욱 교수(인하대)
류전철 교수(전남대)
이승호 교수(건국대)

□ 토론자: 탁희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분야 개정방안

원혜욱, 류전철, 이경재, 이승호

제20장 공안을 해하는 죄

1. 범죄단체조직죄

1) 개정시안

제237조 (범죄단체의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정시안 의견

본죄에 대해서는 그 가담정도에 따라 혹은 범죄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는 주모자, 간부 또는 그 이외의 일정한 자로 제한하여 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개정연구회에서는 가담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그 구분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 소요 및 다중불해산죄 및 전시공수계약이행불이행죄

1) 개정시안

삭 제

2) 개정시안 의견

소요 및 다중불해산의 경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집시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형법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또한 이러한 범죄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가능하며, 양 죄는 예비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폐지하기로 하다. 전시공수계약이행불이행죄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죄이다. 본죄의 취지는 국가비상시에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평행을 이루는 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수주의 형법의 잔재로서 부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1) 개정시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공무방해의 죄(제358조)로 이동

2) 개정시안 의견

공안을 해하는 죄에 대해 사회적 법익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공의 안전·평온에 관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라기보다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라고 할 수 있다.

제21장 폭발물에 관한 죄

1.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1) 개정시안

> 제238조 (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폭발물사용죄의 형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전시폭발물사용죄의 형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벌이 너무 무거우므로 구성요건과 형벌을 세분화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시폭발물사용죄는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2년 형법개정안에는 전시폭발물사용죄를 삭제하였으며, 연구회에서도 삭제하기로 하였다.

2.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1) 개정시안

삭 제

2) 개정시안 의견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는 전시폭발물사용죄의 예비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행위들이지만, 전시폭발물사용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죄의 행위는 원래 폭발물사용 예비죄에 해당함에도 형법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물사용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타당하지 않다.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본 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정위원회에서도 삭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행형법의 방화에 관한 죄에 속해 있던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과실폭발물폭발등의 죄는 위치를 이동하여 이 장에 두기로 하였다.

제22장 방화와 실화의 죄

1.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1) 개정시안

삭 제

2) 개정시안 의견

방화로 인한 위험의 발생은 일반건조물이든 공용건조물이든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일반건조물 등의 방화죄는 유지하되,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2. 실화죄

1) 개정시안

>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제245조 또는 제24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248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과실로 제246조에 기재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또는 제24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개정시안 의견

제2항의 죄에서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 및 일반물건이 객체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도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는 표현에 대해 타인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긍정설의 입장 역시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제170조 제2항의 객체에 타인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시켜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의 흠결에 대해서는 해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제170조 제2항에 대해 2003년과 2005년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3. 폭발성물건파열죄등

1) 개정시안 - 폭발물등에 관한 죄의 장으로 이동

> 제239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0조 (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1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4조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238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4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폭발성물건파열죄는 보일러・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신체 또는 재산이다. 보호의 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1995년 개정형법에서 화약은 폭발성물건이 아니라 폭발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압가스로 바꾸고 침해범에서 구체적 위험범으로 개정하였다. 입법론상으로는 방화의 실화의 죄로서가 아니라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공급등방해죄 등과 함께 폭발물에 관한 죄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3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 개정시안

삭제

2) 개정시안 의견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는 공용건조물과 일반건조물의 차별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제178조의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를 삭제하였으며, 본 죄를 제23장에 규정하였다. 형법개정연구회에서도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제24장 교통방해의 죄

1. 일반교통방해죄

1) 개정시안

제262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기타 방법으로'의 문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도로의 일부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경우에 까지 적용함으로써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남용의 여지가 발생한다. 또한 자동차 등이 아니라 보행자를 일반교통방해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동시에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일본의 조문을 참조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하여 그 남용의 여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연구회에서는 교통이 방해되는 사안을 구체화하여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형태를 '손괴'와 동등한 정도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2.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1) 개정시안

> 제269조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운행중인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선박의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교통사고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최근 술에 취한 승객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형법에 규정하여 단순폭행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시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형법에 규정된 일반폭행죄보다 형벌이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처벌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2007년 1월 3일 신설[1]됨에 따라 일반형법에 신설할 것인가에 논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의 폭행죄 혹은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범죄를 주지시켜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할 것인데,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형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보다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특별법은 가급적 일반형법에 흡수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일반형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1)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장 음식물에 관한 죄

1) 개정시안

제270조 (음식물오염) ①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그 원료를 오염시켜 食飮하지 못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음식물 또는 그 원료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1조 (수도식수사용방해) ①수도로 공중에게 공급되는 식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식수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식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음식물혼독등치사상) 제270조 제2항 또는 제271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3조 (수도불통) 공중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4조 (미수범) 제270조 제2항, 제271조 제2항 및 제27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5조 (예비·음모) 제270조 제2항, 제271조 제2항 및 제27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6조 (과실독물혼입등) ①과실로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그 원료나 수도로 공중에게 공급되는 식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현행 형법 제16장의 음용수에 관한 죄의 장을 1992년 법무부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일상생활에 공하는 정수만을 깨끗한 상태로 사용될 것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강했으나 현재에는 정수뿐만 아니라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그 원료" 역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모든 음식물 - 정수뿐만 아니라 우유, 쥬스, 청량음료 등도 포함되며 밥을 비롯한 음

식물에 모래 등을 섞는 것과 같이 오물 이외의 물질로도 음식물을 식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용을 식음으로 바꾼 것은 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 모두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이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유해한 식품을 제조하거나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매 목적의 식품 제조 등에 국한되고 단순히 음식물을 오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1992년 법무부 개정안처럼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과실독물혼입죄를 신설하여 과실로 정수 또는 수도로 공중에게 공급되는 식수나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1992년 법무부 개정안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26장 아편에 관한 죄

1) 개정시안

전부 삭제

2) 개정시안 의견

현행 형법 제17장의 아편에 관한 죄는 현재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장의 내용은 모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 장의 내용을 삭제하여도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형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특가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가중처벌만을 위한 규정이므로 屋上屋에 불과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이나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개정안에서도 모두 아편에 관한 죄의 장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연구원 개정안은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도 삭제하도록 제안하고 있었다.

제27장 환경에 관한 죄

1) 개정시안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지

2) 개정시안 의견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형법에 환경에 관한 죄를 편입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시행된 지 오래된 터라 이 특별조치법이 일종의 환경형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제28장 통화에 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1) 개정시안

현행형법을 유지하되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내용만 삭제

제29장 유가증권에 관한 죄

1) 개정시안

> 제285조 (자격사칭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법률용어의 순화 차원에서 '모용'을 '사칭'으로 수정하였다.

제30장 문서에 관한 죄

1. 공문서·사문서의 단일화

1) 개정시안

> 제295조 (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97조 (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302조 (문서의 부정행사)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공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는 사문서에 비해 불법이 가중된 경우로 보고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은 일본을 통해 계수된 독일의 1871년 제국형법의 영향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생활분야에서 거래주체로서 국가 공공단체나 사인, 공기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무너졌고 공·사문서에 대한 안전과 신용보호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태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문서의 구별의 배경이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관료적인 전통이 개인의 사문서에 비해 공문서의 높은 신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데 언제까지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을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개정논의가 있는 시점에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하지 않는 입법태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 개정시안

> 제226조 (자격사칭에 의한 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용어순화와 공문서, 사문서 단일화 취지의 개정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1) 개정시안

> 제298조 (허위문서작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인 의사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5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부지의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문서죄의 해석론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들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와 관련한 판례와 학설의 주장들을 입법론에 의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이미 40년이 넘게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형법상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의 처벌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형법 제227조는 진정신분범으로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라는 점이 무모한 해석의 논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해석론의 순화를 위해서 형법 제227조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제31장 인장에 관한 죄

1) 개정시안

제304조 (인장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삭제)

제305조 (공기호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개정시안 의견

문서죄에서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을 폐지하고 단일화한 것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공인과 사인의 구별도 더 이상 의미를 없다. 인장에 관한 죄는 문서나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장에 관한 죄는 다른 위조범죄에 수반되는 범죄로서 문서나 유가증권 위조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정에 관한 죄 중에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사기호와는 달리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타 위조범죄와는 다른 독자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공기호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제3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 간통죄

1) 개정시안

삭제

2) 개정시안 의견

간통죄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존치론과 폐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바, 형법개정연구회에서는 다수 의견이 간통죄 폐지를 선택하였다. 폐지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간통죄는 윤리의 문제를 형법이 개입하는 것으로서 형법의 탈윤리화 경향에 맞지 않는다.

② 부부관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계약관계이고, 따라서 부부가 상대에 대하여 부담하는 성적 성실의무는 계약에서 비롯된 의무이다. 그렇다면 간통은 계약의무의 위반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③ 현행법상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내지 이혼소송의 제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④ 현재에는 간통에 대하여 법원이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또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므로 간통을 민사적으로 해결해도 여성의 지위가 충분히 보호된다. ⑤ 현실적으로 여성의 고소율보다 남성의 고소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죄가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3) 기타

간통죄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정된 존치론과 수정된 폐지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형법개정연구회가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정된 존치론은 간통죄를 존치하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벌금형 등을 법정형에 첨가하여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정통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존치하면서 형을 약화시키는 것은 간통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바, 그렇다면 차라리 폐지의 방안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② 수정된 폐지론은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중혼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혼인한 자가 다시 혼인하는 중혼은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기하므로 처벌하더라도 중혼에 이르지 않은 일반적인 간통은 윤리의 문제와 민사적 처리로 남겨두자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중혼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법제를 감안할 때 실제적 의미를 지닌 절충론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에서는 중혼죄가 간통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형법개정연구회의 의견이었다.

2. 음행매개죄

1) 개정시안

삭 제

2) 개정시안 의견

현행 법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의 규제를 받고 알선의 대상자가 연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형법의 음행매개죄는 성매매가 아닌 음행의 매개행위로서 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에 형법개정연구회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형법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형법의 음행매개죄는 과잉입법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음화반포등죄

1) 개정시안

> 제307조 (음란물등의 배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이나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가) 행위객체의 확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함)」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법 제74조 1항 2호와 제44조의7 1호). 즉, 형법의 음화반포등죄의 행위 객체를 부호 등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형법개정연구회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규정을 형법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행위객체가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표제 역시 '음란물등'으로 수정하였다.

나) 문구수정

음란물 관련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형법은 '반포',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보통신망법’은 ‘배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데, 형법개정연구회에서는 ‘배포’가 더 통상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여 수정하였다.

다) 기타

형법은 음화반포등죄의 행위객체를 표현함에 있어서 ‘음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음란’은 규범적인 개념이어서 다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음란’이 법용어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이를 사실개념으로 대체하기를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포르노그라피’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하지만 형법개정연구회의 다수의견은 포르노그라피라는 용어 역시 나름의 다의성과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음란이 규범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음란의 개념, 판단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그 동안 판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적절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4. 음화제조등죄

1) 개정시안

> 제308조 (음란물등제조등) 제307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이나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정보통신망법은 배포 등의 행위만을 처벌할 뿐 배포 등의 목적으로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여기서 형법의 음란물 관련범죄에서처럼 배포등 뿐 아니라 제조등의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형법개정연구회의 다수의견은 굳이 객체가 다르다고 하여 제조등의 행위를 불벌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포등의 행위와 제조등의 행위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5. 공연음란죄

1) 개정시안

제309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공연음란죄와 관련해서는 입법론상 공연음란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음란한 행위의 범위를 명시하자는 주장, 공연음란죄를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자는 주장까지 제시되고 있는 바, 형법개정연구회에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제33장 도박에 관한 죄

1. 단순도박죄

1) 개정시안

제300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개정시안 의견

가) 존치

단순도박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도박과 오락은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오락이 아닌 도박이라면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형법개정연구회는 단순도박죄의 존치를 선택하였다.

나) 재산상 이익의 추가

도박의 대상에는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시켜야 법의 흠결이 보완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재산상 이익을 포함시키다보니 문구 역시 '걸고'로 수정되었다.

2. 상습도박죄

1) 개정시안

제310조 (도박, 상습도박)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상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영리의 목적으로 반복하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시되었지만, 해당 용어가 상습의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형법개정연구회에서는 상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도박개장죄

1) 개정시안

제311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정시안 의견

도박개장죄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별다른 주장이 없었으며, 형법개정연구회에서도 현행규정을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복표의 발매등죄

1) 개정시안

삭 제

2) 개정시안 의견

가) 복표취득죄의 폐지

복표를 취득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판단 하에 형법개정연구회는 복표취득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복표발매등죄의 폐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은 복표발행업을 사행행위영업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법 제2조 1항 1호), 무허가로 복표발행영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법 제30조 1항). 따라서 형법상의 복표발매등는 영업이 아닌 형태로 복표를 발매·중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렇게 영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벌금병과규정

1) 개정시안

> 제312조 (벌금의 병과) 제310조 제2항과 제311조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개정시안 의견

벌금 병과규정을 징역에 처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시되었으나, 형법개정연구회는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6. 표제

1) 개정시안

도박에 관한 죄로 수정한다.

2) 개정시안 의견

복표관련범죄를 폐지하면 표제를 도박에 관한 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34장 신앙에 관한 죄

변사체검시방해죄

변사체검시방해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공무방해죄의 장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견해인 바, 형법개정연구회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개정안 조문비교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21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20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41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도 또는 공갈의 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 기재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7조 (범죄단체의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②항과 제③의 삭제)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2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3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들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삭제)	(삭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위치 이동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9조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무를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22장 폭발물 등에 관한 죄**	**제21장 폭발물등에 관한 죄**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4조 (폭발물폭발) ①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38조 (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5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제239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역에 처한다.	징역에 처한다.
	제246조 (가스·전기 등 방류) ①가스, 전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산포(散布)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0조 (가스·전기 등 방류) ①가스, 전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산포(散布)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7조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사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1조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사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8조 (미수범) 제244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및 제247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2조 (미수범) 제238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및 제241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9조 (예비·음모, 선동) ①제244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및 제247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244조 제1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제243조 (예비·음모·선동) ①제238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2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23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제1항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1항의 형과 같다.	의 형과 같다.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삭제)
	제250조 (과실폭발물폭발 등) ①과실로 제244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및 제247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 (과실폭발물폭발 등) ①과실로 제238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및 제241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2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22장 방화와 실화**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도는 광갱을 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5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삭제)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	제252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불을 놓아 제251	제24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불을 놓아 제245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제1항에 규정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도는 광갱을 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제1항에 규정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도는 광갱을 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3조 (일반물건방화) ①불을 놓아 제251조 제1항 및 제25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 (일반물건방화) ①불을 놓아 제245조 제1항 및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 (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연소) ①제252조 제2항 또는 제253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251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에 규정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53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253조 제1항에 규정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8조 (연소) ①제246조 제2항 또는 제24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245조 또는 제24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4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247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 (진화방해) 화재 발생시에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 (실화) ①과실로 제251조 제1항 또는 타인의 소유인 제252조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252조 제2항 또는 제253조에 규정된	제250조 (실화) ①과실로 제245조 제1항 또는 타인의 소유인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246조에 기재한 자기의 소유에 속하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는 물건 또는 제24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 (업무상 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 제175조	(폭발물등에 관한 죄에 규정)	(폭발물등에 관한 죄에 규정)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미수범) 제251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2조 (미수범) 제245조 제1항 또는 제246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59조 (예비·음모) 제251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53조 (예비·음모) 제245조 제1항 또는 제24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제260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인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이 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본다.	제254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2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23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	제261조 (현주건조물 등 일수) ①물을 넘치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	제255조 (현주건조물 등 일수) ①물을 넘치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물에 잠기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물에 잠기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삭제)
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2조 (일반건조물 등 일수) ① 물을 넘치게 하여 제261조에 규정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물에 잠기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물에 잠기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60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56조 (일반건조물 등 일수) ① 물을 넘치게 하여 제255조에 규정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물에 잠기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물에 잠기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54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0조 (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2조 (방수방해) 수재 발생시에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 (방수방해) 수재 발생시에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 (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 (과실일수) 과실로 제261조에 규정된 물건을 물에 잠기게 한 자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물건을 물에 잠기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 (과실일수) 과실로 제255조에 규정된 물건을 물에 잠기게 한 자 또는 제000조에 규정된 물건을 물에 잠기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182조 (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5조 (미수범) 제261조 및 제26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 (미수범) 제255조 및 제256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 (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6조 (예비·음모) 제261조 및 제26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예비·음모) 제255조 및 제25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4조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 (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 (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25장 교통방해의 죄**	**제24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교량 기타 교통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로의 표지 기타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9조 (기차 등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교통로의 표지 등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3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기차전복 등)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4조 (기차등의 전복등)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	제273조 (교통방해치사상) ①제268조 내지 제27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	제265조 (교통방해치사상) 제262조 내지 제264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7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 (과실기차전복 등) ①과실로 제2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제264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4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0조 (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5조 (미수범) 제268조 내지 제27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7조 (미수범) 제262조 내지 제26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 (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6조 (예비·음모) 제269조 내지 제27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271조의 죄를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68조 (예비·음모) 제263조 또는 제26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9조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운행중인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선박의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교통사고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罪	**제26장 음식물에 관한 죄**	**제25장 음식물에 관한 죄**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	제277조 (음식물오염) ①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그 원료를 오염시켜 식음하지 못하게 한	제270조 (음식물오염) ①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그 원료를 오염시켜 식음하지 못하게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음식물 또는 그 원료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음식물 또는 그 원료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 (수도식수사용방해) ①수도로 공중에게 공급되는 식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식수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식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1조 (수도식수사용방해) ①수도로 공중에게 공급되는 식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식수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식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9조 (음식물혼독등치사상) 제277조제2항 또는 제278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2조 (음식물혼독등치사상) 제270조 제2항 또는 제271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5조 (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0조 (수도불통) 공중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3조 (수도불통) 공중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 (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 (미수범) 제277조제2항, 제278조제2항 및 제28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4조 (미수범) 제270조 제2항, 제271조 제2항 및 제27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 (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 (예비·음모) 제277조제2항, 제278조제2항 및 제28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5조 (예비·음모) 제270조 제2항, 제271조제2항 및 제27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3조 (과실독물혼입등) ①과실로 다수인에게 제	제276조 (과실독물혼입등) ①과실로 다수인에게 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공되는 음식물 또는 그 원료나 수도로 공중에게 공급되는 식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되는 음식물 또는 그 원료나 수도로 공중에게 공급되는 식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 제206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전부 삭제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전부 삭제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6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目的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88조 (통화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된 제1항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7조 (통화의 위조등) 현행형법과 동일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89조 (위조통화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제288조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제27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7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처한다.	다.	금에 처한다.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 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9조 (벌금의 병과) 제707조 또는 제27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1조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 제288조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7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① 판매할 目的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年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2조(통화유사물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통화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8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현행형법과 동일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3조 (미수범) 제288조, 제289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 (미수범) 제277조, 제278조와 제28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 (예비, 음모)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者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94조 (예비·음모) 제28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83조 (예비· 음모) 제27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者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9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9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7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5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과 동일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5조 (자격사칭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현행형법과 동일
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현행형법과 동일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99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8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현행형법과 동일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0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현행형법과 동일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에 처한다.	에 처한다.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01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0조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21조 (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 (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1조 (소인말소) 현행형법과 동일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03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현행형법과 동일
제223조 (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4조 (미수범) 제295조 내지 제300조 및 제30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3조 (미수범) 제284조 내지 제289조와 제29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4조 (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예비·음모) 제295조, 제296조 및 제299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예비·음모)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3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8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5조 (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7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 (자격사칭에 의한 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 허위문서작성죄로 변경)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9조(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치이동 - 제299조)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11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306조 내지 제310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치이동 - 제300조)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者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者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他人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5조(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他人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 (허위문서작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인 의사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부지의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17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313조 내지 제316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00조 (위조등 문서의 행사) 제295조 내지 제299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8조 (미수범) 제306조 내지 제3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미수범) 제295조 내지 제33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 (문서의 부정행사)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0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06조 내지 제309조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삭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제321조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제303조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3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9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2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4조 (인장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삭제)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3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05조 (공기호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규정 없음	**제27장 환경에 관한 죄** 제284조 (환경오염)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방출 · 유출 · 산포 또는 투기하여 대기, 토양 또는 하천 기타 공공수역을 오염시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지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 (환경오염치사상) 제284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6조 (미수범) 제28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7조 (과실환경오염) ①과실로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질을 방출·유출·산포 또는 투기하여 대기, 토양 또는 하천 기타 공공수역을 오염시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0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325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제1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삭제)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6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18세 미만이거나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7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음란물등의 배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이나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 (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음화제조등) 제327조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음란물등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이나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 (공연음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09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3장 도박에 관한 죄**	**제31장 도박에 관한 죄**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한때 오락 정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상습자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삭제)	(삭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32조 (벌금의 병과) 제330조 제2항 및 제331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310 제2항 및 제311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34장 신앙과 사체에 관한 죄**	**제32장 신앙과 사체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 (장례식등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4조 (사체등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5조 (분묘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5조 (분묘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6조 (사체등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6조 (사체등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7조 (미수범) 제160조 내지 제16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7조 (미수범) 제315조와 제31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0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치이동 - 공무방해죄의 장 제359조로 이동)

제6주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개정방안

□ 발표자: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참여자: 조 국 교수(서울대)
도중진 교수(충남대)

□ 토론자: 김성훈 검사(법무부 공안기획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개정방안

조 국, 도중진, 박미숙

제35장 내란의 죄

제318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권력을 행사하거나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가의 기본질서를 변혁할 목적으로 다중이 폭동을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핵심주모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상해, 파괴 또는 약탈한 자도 제2호의 형과 같다.
4. 기타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의 실행행위인 '폭동'의 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형법 제87조(필자 주 현행 형법)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폭동에 협박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유형력의 행사와 결합된 협박은 폭동이 될 수 있어도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해악의 고지만으로는 폭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새긴다. 협박을 통한 내란이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다수는 소수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다만 표현은 학설상의 다툼의 여지를 열어논다는 취지에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폭동한"이라는 문언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인지가 의문스럽다. 이에 "폭동을 한"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현행 형법 제87조 제1호의 '수괴'라는 용어는 현대 한국어용법에 부합하지 않고 도덕적 비난을 내포하는 용어인 바, 이를 '핵심주모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기존의 문언은 해당 내용을 본조에서 명확히 표현한다는 취지에서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본조의 조문에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와 제87조 제2호의 살상죄가 어떻게 구별되는가의

문제가 있었다. 제88조가 제87조 제2호의 가중처벌 규정이라는 견해, 제88조의 객체는 요인이고 87조 제2호의 객체는 사람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다. 판례는 내란죄의 폭동에 수반되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내란죄만 성립하고 내란죄의 폭동에 수반되지 않고 별도로 국헌문란 등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제87조 제2호의 '살상'을 '상해'로 수정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위원회는 살상은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하고, 상해만 본죄의 조문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현행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바, 제87조의 제2호의 '살상' 행위에 대한 법정형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다.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87조 내란죄의 법정형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사형제 존폐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제2호의 법정형에 사형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다. 제87조의 제2호에 대응한 일본 형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법정형에 사형이 없다. 따라서 내란목적살인의 경우와 달리 상해만을 포함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의참가자의 법정형을 다소 조정하였다.

> 제319조(내란목적단체조직) 제31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제318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구성죄 폐지를 전제로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하고, 이에 수반하여 현행 형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개정하여 내란목적단체조직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 및 선전, 선동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6장 외환의 죄

> 형법 제323조 (외환유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와 통모하여 그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의 '외국'을 해석함에 있어 다수설은 여적죄가 규정하는 '적국' 이외의 외국을 의미한다는 입장과 '외국'은 '적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소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하고 있다. 외국인 개인과 통모하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은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따라 1992년 법무부 개정안과 동일하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와 통모하는 경우로 축소하였다. 또한 ‘항적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 제324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93조 여적죄상의 ‘적국’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한다. 그리고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준적국’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현재 ‘국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이 형법 제93조의 ‘적국’ 또는 제102조의 ‘준적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특히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관련하여 북한을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적국, 준적국의 개념규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해석에 맡기기로 하였다. 다만 ‘항적’이라는 표현을 외환유치죄의 규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여적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사형을 유지하고 작량감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대적 법정형은 위헌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적죄에 대응하는 중국 형법 제102조의 경우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부가하였다.

> 제329조(간첩) ①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제1항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북한과 관련한 문제

판례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는 북한을 ‘적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상기 여적죄의 ‘적국’, ‘준적국’ 규정과 더불어, 형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일으킨다. 북한을 ‘외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정신과 남북관계를 특수한 내부적 관계로 규정하는 남북합의서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가적 실체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엔에 가입해 있는 북한을 단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시대변화에 조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의 견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제기되었다: "북한을 내란, 외환, 간첩죄 적용에 한하여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내란, 외환, 간첩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북한은 '적국'이 아니라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교섭의 주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형법전에 명기한다는 것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따옴표를 쳐서 표시함으로써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피하기로 한다."

그러나 적국 등의 개념을 단순히 형법의 영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에서 동 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맡기기로 하였다.

간첩죄의 대상확대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적 태도는 적국과 우방이 선명히 구분되는 '냉전'적 국제질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적국과 우방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탈냉전'적 국제정세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불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독일 형법 제94조 간첩죄와 제99조 타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죄의 경우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한다. 프랑스 형법 제411-2조~제411-8조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외국 이외에도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로 규정하였다.

또한 간첩죄를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로 규정하는 결과 종전의 '적국'을 위한 현행 간첩죄의 법정형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군사상 기밀의 정의

과거 판례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기밀'을 국내의 공지의 사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비판을 받았으나, 근래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느냐를 기준을 채택하여 기밀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19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밀'과 '군사상 기밀' 양자를 구별하여 정의하지는 않고,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는 '군사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점에서 '국가기밀'과 '군사상 기밀'의 정의를 형법전 속에 둘 필요가 있다. 독일 형법은 간첩죄 조항 앞에 '국가기밀'을 정의하는 제93조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 형법 제413-9조 역시 '국방기밀'에 대한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기밀'과 '군사상 기밀'의 정의를 형법전에 둘 경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제98조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를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상의 정의로 간단히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제98조 제1항은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간첩'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기에 대체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하여 제98조 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98조 제2항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군사상 기밀'의 정의를 활용하여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때 제98조 제1항 '간첩'의 의미는 새로 구성된 동조 제2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간첩방조죄의 법정형

간첩죄의 법정형과 간첩방조죄의 법정형이 같아 위헌의 소지가 있기에 간첩방조의 법정형의 가볍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제330조 (일반이적) 제323조 내지 제329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이적죄의 구성요건은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오영근)이 있다. 제323-329조에서 구체적인 이적행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제330조가 필요한지 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일반 이적행위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현행 형법 제103조)의 삭제

현행 형법 제103조는 독일 구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시계약불이행죄에서 유래한 것이나, 단순한 계약위반은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불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 기타 사변에 있어서의 계약위반은 계엄이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또는 국가동원법에 의하여 규율하면 족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다.

* 국기에 관한 죄(장의 삭제)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제105조 국기·국장 모독죄의 객체를 제109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와 동일하게, 그 객체를 '공용'의 국기·국장으로 제한하고, 법정형도 낮추었다. '비공용'의 국가의 경우는 공공연하게 모독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은 제106조 국기·국장 비방죄의 구성요건도 국기·국장을 공공연하게 비방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조문은 물론 1992년 개정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공화당 전당대회 인근에서 전개하던 도중 한 시민이 성조기를 불태운 이유로 우리 형법 제105조와 유사한 미국 텍사스주 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기 소각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며, 평화유지를 위하여 또는 국가적 단일성의 상징인 국기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텍사스주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침해의 문제는 제106조 국기·국장 비방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손상, 제거, 오욕 등과는 달리 비방은 국기·국장 자체에 대한 훼손 없이 국기·국장을 언어나 거동으로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 형법의 경우도 외국의 국기·국장 손괴죄는 있지만, 자국 국가·국장 손괴 등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프랑스의 경우 국기와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제433-5-1조), 그 구성요건은 "공권력에 의하여 조직화되고 규정화된 시위 도중"에 국기와 국가를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정형도 7,500 유로의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다(단 이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6월의 구금형이 가능하다).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공용'의 국기·국장 손괴만을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처벌조항이 없어도 손괴죄가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 형법 제105조, 제106조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기·국장의 모독이나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대중적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특정 행위의 범죄화 여부는 '대중적 정서'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행위의 실질적 위험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37장 국교에 관한 죄

1992년 법무부 개정안은 제107조 제2항 외국원수와 외국 사절에 관한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제108조 제2항 외국 사절에 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있어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하여 그 처벌을 가볍게 하였다. 그리고 일본 형법의 경우 외국원수와 외국 사절에 관한 폭행, 협박, 모욕죄가 있었으나(제90-91조), 1995년 삭제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해당 조문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38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4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유기죄는 순전히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행정법상의 징계사유 정도의 의미 밖에 없는 행위를 일반형법에 도입하여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범위도 명백하지 못하므로 입법론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직무유기죄는 단순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처벌의 범위도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명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위배행위를 처벌하여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직무유기죄를 존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형벌로서의 자격정지형의 규정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공법상의 자격을 특별히 정지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자격정지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해 개별법규정에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및 비교법적으로도 자격정지형을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전체로서의 자격정지형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본죄의 자격정지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의 자격정지형의 삭제**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등의 자격정지형 규정도 위와 동일

한 이유에서 삭제하였다.

제345조 (가혹행위)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신체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 제366조 제2항에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강요죄를 신설하였는데 진술강요를 목적으로 한 특정직 종사 공무원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이러한 진술강요죄는 독일 형법 제343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 제366조 제2항은 행위의 방법으로 폭행이나 가혹행위이외에 협박이나 기망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독일형법 제343조와는 달리 행위유형을 폭행과 가혹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협박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사담당자들에게 위축감을 줄 우려가 있는 한편 가혹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기망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진술강요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폭행과 가혹행위로 한정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있어 법치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제345조 제2항과 같이 진술강요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법왜곡죄의 도입 여부

사법기관이 사법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하는 제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형사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통한 형사사법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위반을 판단하는 사법작용의 주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사법의 공정성이라는 국가기능을 훼손하고, 개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보충적·포괄적 직권남용의 규정방식으로 법왜곡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조문의 위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위유형상으로는 일정한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 또는 지위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법왜곡죄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법왜곡행위에 대해서도 현행형법은 부분적으로 법왜곡행위를 포섭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하는 경우에는 '왜곡'행위에 대한 개념이 매우 추상적일 수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왜곡행위의 대부분이 형사법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법관과 검사의 사법권행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사법권의 독립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제347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2년 법무부의 형법개정법률안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국가의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본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존치시키고, 다만 이를 엄격히 적용할 때에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해하게 되고 본죄의 실무운영상 거의 처벌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민주국가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본조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에는 오히려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문구의 표현을 다소 수정하였다.

> 제348조(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현행형법의 2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가진 비밀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누설한 행위는 자연범적인 성격의 범죄로서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행형법의 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는 너무 가볍다할 것이므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하였다.

제349조(선거등의 방해)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 투표인, 후보자 또는 입후보하려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기타 방법으로 선거등의 자유를 방해한 때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방해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상세한 처벌규정과 중복되어 적용례가 거의 없으며, 그때 그때의 정치, 사회적 여건을 고찰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형법규정에서 선거방해죄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도 스위스형법전 처럼 선거와 투표의 방해죄를 제279조 이하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언적 의미라는 점에서도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순히 선거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과정인 입후보 등에도 관련되므로 표제를 '선거등의 방해'로 개정하였다.

또한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죄의 주체를 검찰, 경찰 또는 군 등 특정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선거와 투표의 공정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350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재인의 삭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중재인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제64조),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제12조)을 가리킨다. 중재인은 중재절차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판정하여야 하므로 직무의 공정성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일반적으로 수임행사하는 공무원과는 성질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죄의 기본적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재인에 대하여는 해당 중재인관련법이나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관련범죄에 포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뇌물죄 객체의 명확화

형법상 뇌물죄의 객체인 '뇌물'을 재물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익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뇌물죄 처벌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재물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나, 문자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유추해석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의 객체로는 '뇌물'로 규정하지 않고 '금품이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경법 제5조 내지 제7조는 '금품 기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111조는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뇌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으로 규정하였다.

*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규정 삭제

현행형법 제135조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이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둔 규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양형에서 참작하면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징역을 가중할 필요성이 없고 실무운영상으로도 별로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다.

제39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신설 여부

비교법적으로 형법상 보호되는 공무의 범위에 관하여 첫째, 공무를 주권의 절대적 권위에 의하여 적법 부적법을 불문하고 언제나 보호받는다는 기본입장 하에 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입장과 둘째, 공무집행의 실질적 적법성을 요구하는 입장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형법은 "직무행위가 적법하지 않을 때에는 본죄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3조 제3항), 오스트리아 형법도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할 권한이 없거나 직무행위가 형법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9조 제4항). 독일 형법의 경우 직무의 범위를 권력적 작용에 제한하고 있어 그 내용과 범위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국가의사를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권력적 작용, 특히 명령 또는 처분의 강제적 집행에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통설과 판례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국가의 사법기능적 작용도 법의 한계를 지켜야 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반항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까지 형법에 의하여 보호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한다.

이와 같은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명문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현재의 해석상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판례의 경우에도 정당행위 등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에 제한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맡기기로 하였다.

* 법정모욕죄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삭제

법정모욕죄는 법원조직법의 법정경찰권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경찰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와 모순된다. 그리고 인권옹호직무방해죄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권옹호직무방해죄는 검사의 인권옹호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중복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의 인권옹호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으로 족한 경우로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정모욕죄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규정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제358조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무를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동일한 규정이다. 현행 형법이 본죄를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규정하고 있으나, 본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의미에서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본장에 규정하였다.

제359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문이동)

형법 제163조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신앙에 관한 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1995년 형법 개정시에 구성요건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다는 구성요건을 두고 또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둔 것은 공무방해의 죄로 규정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특히 강력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363조(공용물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 제368조는 재물손괴(제366조)와 공익건조물파괴(제367조)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물이나 공익건조물의 손괴치사상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어 공용물파괴로 인한 치사상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기로 하였다.

제40장 도주와 범인은닉죄

제367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석방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기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음과 비교하여 단순도주죄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부정설은 형법이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기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단순도주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론상 의문이며, 구금된 자를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의무에 속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도주죄와 증거인멸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범죄이고 또한 증거인멸죄가 국가의 형사사법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범임에 반하여, 도주죄는 국가의 구금권을 보호하는 침해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것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도주죄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독일 형법, 오스트리아 형법, 프랑스 형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입법례가 자기도주 또는 단순도주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고, 특수도주죄, 도주원조죄만 처벌하고 있다. 자기도주죄는 인간의 본성상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도주죄는 국가의 구금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경우도 처벌할 필요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해금'이라는 표현을 '석방'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제41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374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위증죄는 순수한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신에 대한 맹서 위반을 처벌하는 종교범죄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위증죄의 종교범죄로서의 성격을 배제할 경우에 형법상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선서요건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단순히 선서 있는 증언에 대하여 높은 증거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될 우려가 있고, 위증죄는 증인에게 부여된 진실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 선서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서약하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서위반에 대하여 특수한 불법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위증죄에 있어서 선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행법상 선서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범죄가 아니며, 선서가 반드시 종교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서요건을 삭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개정안 조문비교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1장 내란의 죄	**제35장 내란의 죄**	**제33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38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권력을 행사하거나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가의 기본질서를 변혁할 목적으로 다중이 폭동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상해, 파괴 또는 약탈한 자도 제2호의 형과 같다. 4. 기타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18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권력을 행사하거나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가의 기본질서를 변혁할 목적으로 다중이 폭동을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핵심주모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상해, 파괴 또는 약탈한 자도 제2호의 형과 같다. 4. 기타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19조(내란목적단체조직) 제31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제318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339조(내란목적살인) 제338조에 규정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20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0조(미수범) 제338조 및 제33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1조(미수범) 제318조 내지 제3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338조 또는 제33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338조 또는 제339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318조 내지 제32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318조 또는 제320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삭제	삭제
제2장 외환의 죄	**제36장 외환의 죄**	**제34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 (외환유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와 통모하여 그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3조 (외환유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와 통모하여 그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34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5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모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6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4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27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8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9조(간첩) ①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0조 (일반이적) 제323조 내지 제329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1조 (미수범) 제323조 내지 제330조의 미수범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342 내지 제34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342조 내지 제34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2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323조 내지 제33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323조 내지 제330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352조 (준적국) 제342조 내지 제351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본다.	제333조 (준적국) 제323조 내지 제332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삭제	삭제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353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33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37장 국기에 관한 죄**	**국기에 관한 죄 (전체 삭제)**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54조 (국기, 국장모독) ①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공용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개정 1995.12.29>)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5조(국기, 국장비방) 제352조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38장 국교에 관한 죄**	**제35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56조(외국원수폭행등)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폭행 또는 협박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공공연하게 제1항의 외국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35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57조(외국사절폭행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공연하게 제1항의 외국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6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8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7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356조 내지 제358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38조 (피해자의 의사) 제335조 내지 제337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60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39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1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0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2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1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39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3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63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4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5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66조(가혹행위)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45조 (가혹행위)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신체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진술을 강요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7조(불법체포등 치사상) ① 제365조 또는 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346조(불법체포등 치사상) 제344조 또는 제34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68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47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69조(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70조(선거등 자유방해)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 투표인, 후보자 또는 입후보하려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49조(선거등의방해)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 투표인, 후보자 또는 입후보하려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기타 방법으로 선거등의 자유를 방해한 때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71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약속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0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제372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제351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73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제371조 또는 제37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2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이 제350조 또는 제351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74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3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	제375조(뇌물공여등) ① 제371조 내지 제374조에 기재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354조(뇌물공여등) ① 제350조 내지 제353조에 기재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76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제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5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제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삭제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0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77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8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제381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삭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9조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무를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8조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무를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문이동)
	제380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9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문이동)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82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삭제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83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	제384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	제361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5조(공무상비밀침해)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 기재의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6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2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7조(공용물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63조(공용물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제388조 (공무상보관물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	제364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미수범) 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9조(미수범) 제383조 내지 제387조 제1항 및 제38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5조(미수범) 제360조 내지 362조, 제363조 제1항, 제36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90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77조, 제381조 또는 제383조 내지 제38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제356조와 제360조 내지 제36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1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3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91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구금, 유치 또는 수용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 유치, 구치 또는 수용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석방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7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석방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46조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2조(특수도주) ①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제39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에 수용된 자가 제1항의 방법으로 도주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8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6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제147조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3조(도주원조등) 제391조 제1항에 규정된 자기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9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4조(감시자도주원조) 제393조에 규정된 자를 감시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70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5조 (미수범) 제391조 내지 제39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7조 내지 제37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 (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6조 (예비, 음모) 제393조 또는 제39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72조 (예비, 음모) 제369조와 제370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7조(범인은닉등)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3(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8조(친족간의 특례) ①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39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39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42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3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제399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제374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400조(자백, 자수) 제399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75조(자백, 자수) 제374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401조(허위감정·통역·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제399조 및 제400조의 예에 의한다.	제376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제374조 및 제375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02조 (증거인멸등)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77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03조(친족간의 특례) ①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현행형법	1992년 법무부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동거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40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외의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40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무고의 죄	**제43장 무고의 죄**	**제40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4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8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 (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405조(자백, 자수) 제400조는 제404조에 준용한다.	제379조 (자백·자수) 제375조는 제378조에 준용한다.

2009년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죄수·형벌론 및 형법각칙

발행일 / 2009년 9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 575-5285
팩스 (02) 571-7488
인 쇄 / (주)이환기획인쇄
전화 (02) 764-1116

※ 본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